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85호

2016. 12. 15.(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2424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6-242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6-2433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

◆ 고 시

제2016-398호 행당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8
제2016-399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10
제2016-4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지형 도면 고시	17
제2016-401호 도시철도 역명 개정 확정 고시	22
제2016-403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23
제2016-405호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
제2016-40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대학교)	38
제2016-40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46
제2016-40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2

◆ 공 고

제2016-2375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57
제2016-2380호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58
제2016-2381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열람공고	58
제2016-238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59
제2016-23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60
제2016-238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62
제2016-2390호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63
제2016-2400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64
제2016-2401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계획 공고	65

제2016-240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71
제2016-2409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73
제2016-241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74
제2016-2411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75
제2016-241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76
제2016-2413호 장충단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76
제2016-2416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78
제2016-2417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78
제2016-2418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79
제2016-2419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79
제2016-2420호 2016년도 제22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80
제2016-2427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81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6-10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86
------------------------------	----

◆ 구 고 시

제2016-1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88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양천구)	99
제2016-11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강서구)	100
제2016-86호 군부대 특별계획구역(D2-1)구역 공사완료 정정 고시(금천구)	101
제2016-87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금천구) ...	101
제2016-107호 도시관리계획 [미립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110
제2016-1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112
제2016-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15

◆ 구 공 고

제2016-964호 도시계획시설(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 실시계획(안) 열람 공고(노원구)	120
제2016-9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노원구)	123
제2016-10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	125
제2016-130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양천구)	132
제2016-1177호 (가칭) 금천구 발달장애인 복지센터(건물) 기부채납 희망자 모집 공고(금천구)	133

제2016-205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134
---	-----

◆ 사업소고시

제2016-2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7
------------------------------------	-----

◆ 사업소공고

제2016-28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38
제2016-28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53

◆ 기 타

제2016-44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9
제2016-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9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4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과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안 제2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구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주기 규정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 5년 마다 수립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 : 1년 마다 수립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추진전략 및 방향 등
 -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주거, 소득 영역 등
-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 실시 예외 사항 규정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에서 규정된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 생략 가능

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기준(안 제3조)

-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자격 규정

-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자격 규정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된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경비 지원에서 제외함(TF팀 회의 시 단체의 건의사항 반영)

○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 및 지원 기간 규정

- 지원 기준

① 1자치구에 1개 이상 센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 말 기준 등록된 장애인구수 및 특정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② 예산의 범위와 자치구별 장애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원 센터수를 조정

- 지원 기간 : 3년

-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체 순위가 90%이상에 해당하는 센터의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원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밖의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센터는 재공모 대상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제재(안 제4조)

- 회계 부정,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등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평가와 지도·감독(안 제5조)

-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 :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안 제6조)

사.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지원 대상 장애인 규정(안 제7조)

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규정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전화 : 02)2133-7474, FAX : 02)2133-7360, E-Mail : gyungsik@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이 기존 주택 건설 및 공급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관리와 같이 토지의 관리도 명시하여 토지의 취득, 공급과 연계된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나.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외 산업단지 건립 등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제2호)

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라 사업범위에 주거복지사업을 명시(안 제21조제1항제12호)

라. 주택 사업 외 사업범위 추가 확대(안 제21조제1항제12호~제15호)

－ 관광지 개발 및 운영·관리, 부동산 개발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013, FAX : 2133-0752, E-mail : ktj22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33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조)
- 다.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도시재생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따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재생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정책과[전화: 02)2133-8617, FAX: 02)2133-0746 E-mail: min9han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8호

행당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89호(2005.12.15)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01호(2007.8.30)로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70호(2008.7.3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71호(2009. 7.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8호(2010.11.1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6(2011.11.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19(2012.11.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5(2014.03.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75(2014.05.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4(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6(2015.06.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8(2015.12.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행당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시행자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행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행당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원
- 면적 : 70,794m²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변경)
 - 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사무소 소재지 (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5.12.15. ~ 2016.12.31	2005.12.15. ~ 2017.12.31	-

- 변경사유 : 일부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사업기간(시행기간) 연장하고, 일부준공 필요시 도시개발법 제60조4항에 의거 처리

-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 사.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 아.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2. 행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행당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원
- 면적 : 70,794m²

라. 시행자 (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마. 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기간	2005.12.15. ~ 2016.12.31	2005.12.15. ~ 2017.12.31	-

- 변경사유 : 일부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사업기간(시행기간) 연장하고, 일부준공 필요시 도시개발법 제60조4항에 의거 처리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자.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 성동구 도시계획과 (☎ 02)2286- 5557)
-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당도시개발사업소(☎ 02)2282-6031~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9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1997.07.28)로 방학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0호(2006.04.27)로 변경 결정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역내 필요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학동 720번지 일대	259,250	-	259,250	1997.7.28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광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생활권 공 원	소공원	방학동717-1	1,289	-	1,289	서고제2006-140호 2006.4.27	
변경			어린이공원						

■ 변경사유서

위치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학동 717-1	생활권공원	소공원 → 어린이공원	효율성이 낮은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항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나.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라. 건축선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4. 인센티브 운영규정 관한 결정(변경)

가.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 [변경사항 없음]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 [변경사항 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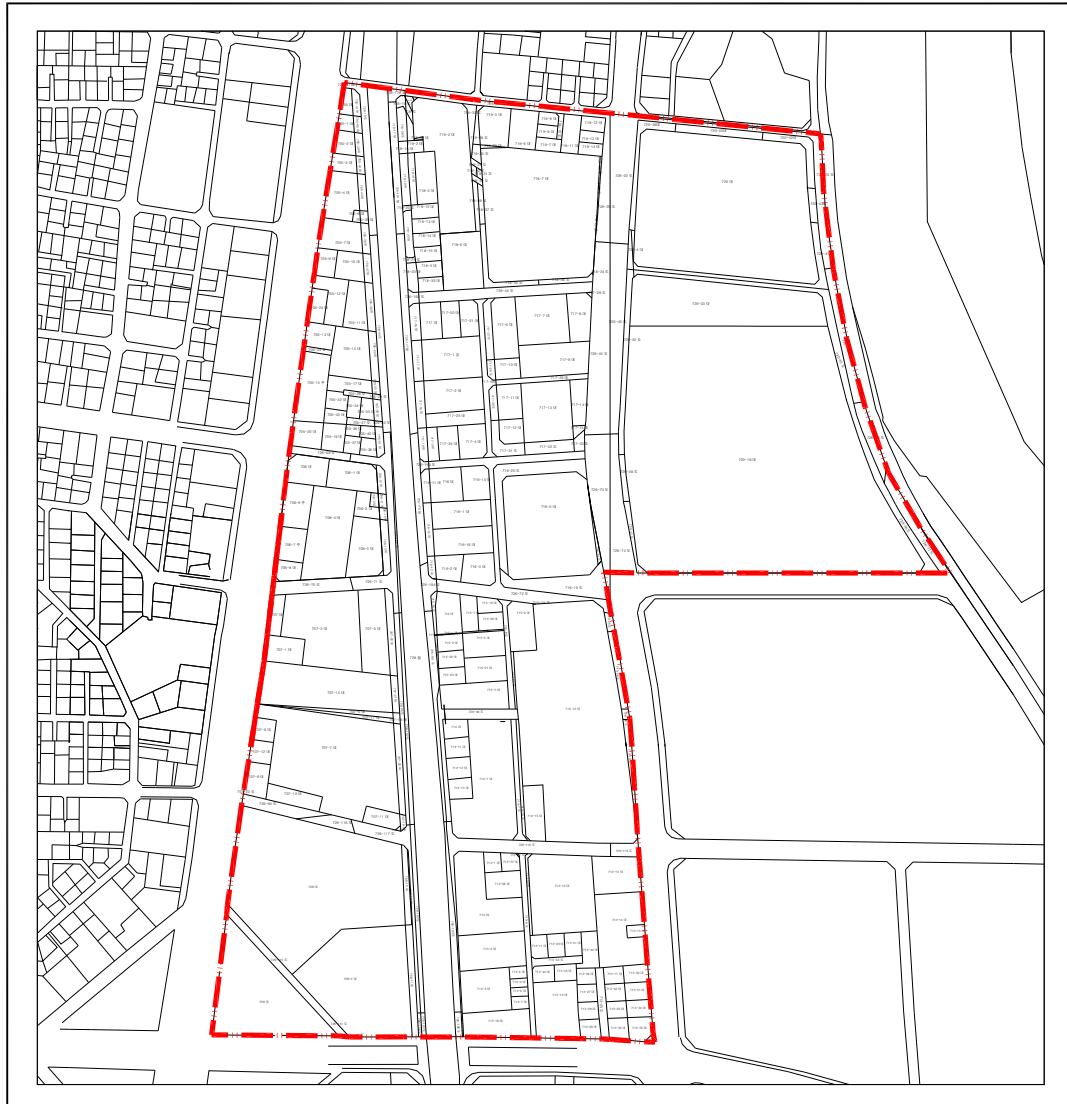
V.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봉구 도시계획과(☎02-2091-3563)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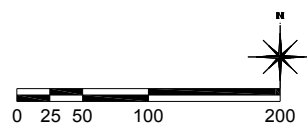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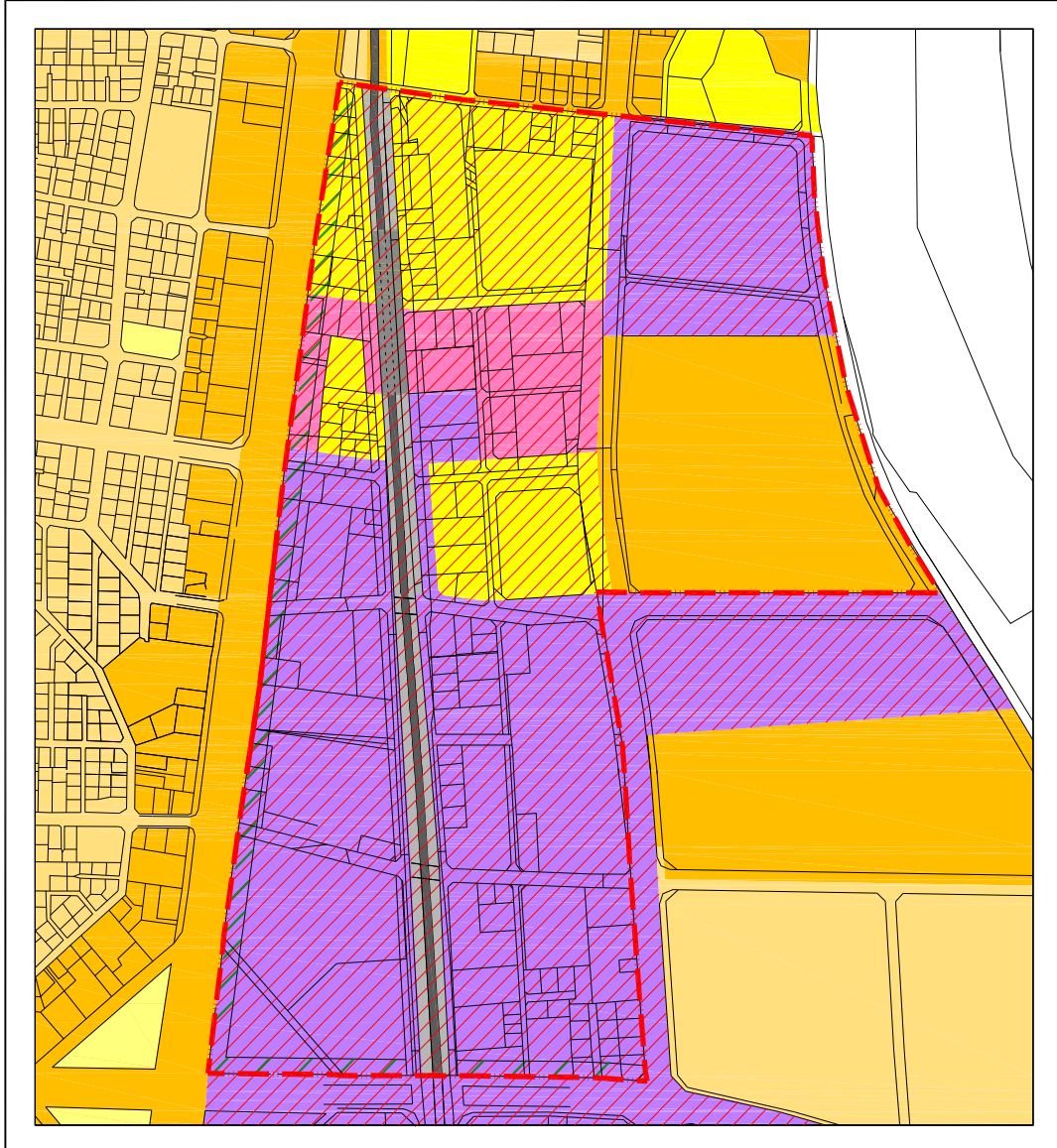
방 학
역세권
지구단위
계 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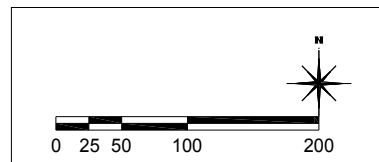
■ 용도 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방 학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 지구단위계획 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도 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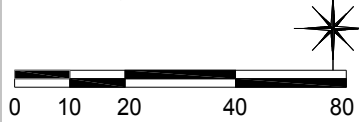


방 학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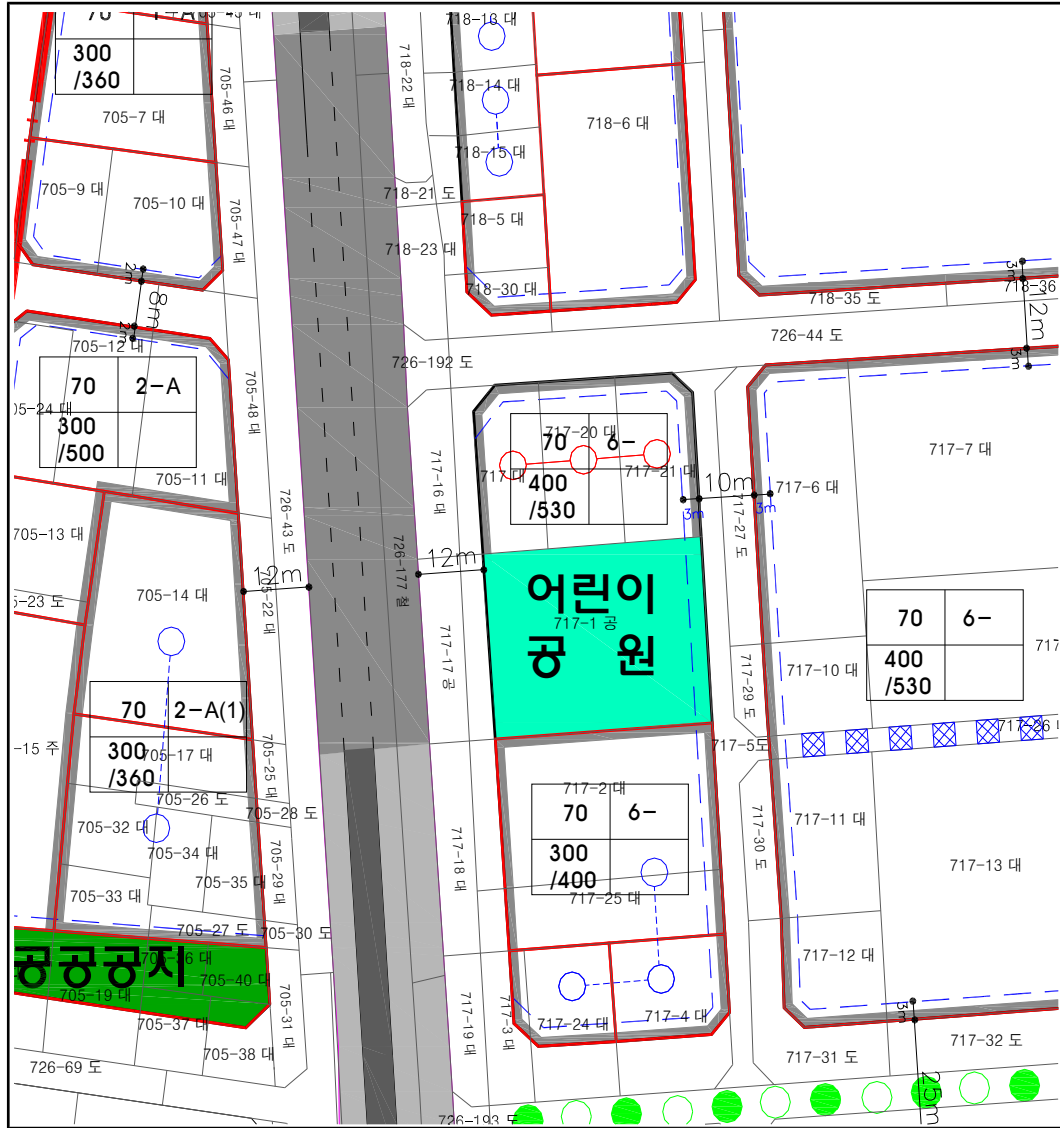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높이, 용도, 용적률, 형태 |
| 건축한계선 | 높이, 용도, 용적률, 형태 동일적용구역 |
| 획지선 | 소공원 |
| 공동개발(지정) | |
| 공동개발(권장)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공동주차출입구간 | |
| 보행자 우선도로 | |
| 공공보행통로 | |
| 공개공지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S = 1 : 1,000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방학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높이, 용도, 용적률, 형태 |
| 건축한계선 | 높이, 용도, 용적률, 형태 등실적용구역 |
| 획지선 | 어린이공원 |
| 광동개발(지정) | |
| 광동개발(권장)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광동주차출입구간 | |
| 도행자 우선도로 | |
| 광동보행통로 | |
| 공개공지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S = 1 : 1,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00호(1994.9.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4호(2013.8.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일대 한성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일대에 위치한 한성대학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역구분, 밀도계획 등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교	대 학 (한성대학교)	전 체	39,310.9	-	39,310.9	서울시 고시 제1994-300호 (1994.9.14)	
			제1캠퍼스 성북구 삼선동2가 389	38,869.7	-	38,869.7		
			제2캠퍼스 성북구 삼선동2가 388	441.2	-	441.2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 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8,107.00	제1캠퍼스
		②	8,691.00	제1캠퍼스
		③	13,301.00	제1캠퍼스
		④	441.20	제2캠퍼스
	소 계		30,540.20	

구역		구분	면적 (㎡)	비고
유지	외부활동구역	⑤	4,349.00	제1캠퍼스
	소계		4,349.00	
보존	녹지보존구역	⑥	4,421.70	제1캠퍼스
	소계		4,421.70	
합계			39,310.90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제1캠퍼스	38,387.70	60.00	29.67	40.00	- 밀도산정기준면적 (제1캠퍼스) -제외면적(공원) : 482.00㎡ -밀도산정면적 : 38,869.70㎡ - 482.00㎡ = 38,387.70㎡
제2캠퍼스	441.20	60.00	11.29	30.00	
합계	38,828.90	60.00	29.46	40.0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법정 용적률(%)	사용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관리 높이 (m)	비고
①	200.00	101.02	-	150.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이하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일반관리구역
②	200.00	213.38	+75.00	275.00	- 지표로부터 +41m이하 (해발고도 108m이하)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일반관리구역
③	200.00	256.66	+65.00	265.00	- 지표로부터 최대 +12m, 28m이하 - 지표로부터 최대 +30m, 41m이하 (해발고도 96m, 108m이하)	일반관리구역
④	200.00	22.57	-	100.00	지표로부터 최대 +12m이하	일반관리구역
⑤	200.00	-	-156.00	5.00	- 지표로부터 최대 +6m이하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외부활동구역
⑥	200.00	-	-196.00	-		녹지보존구역

※ 구역별 높이계획 : 고시도면 참조.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 수	비 고
②구역	17	행복기숙사	705.41	6,795.80	4,870.40	지하2층/지상7층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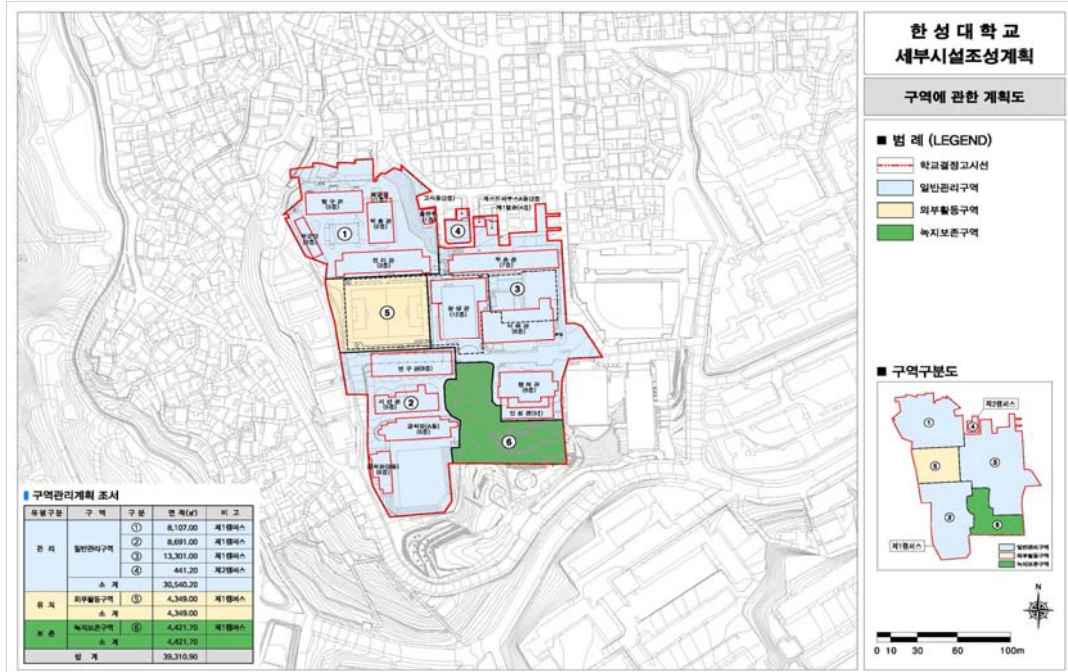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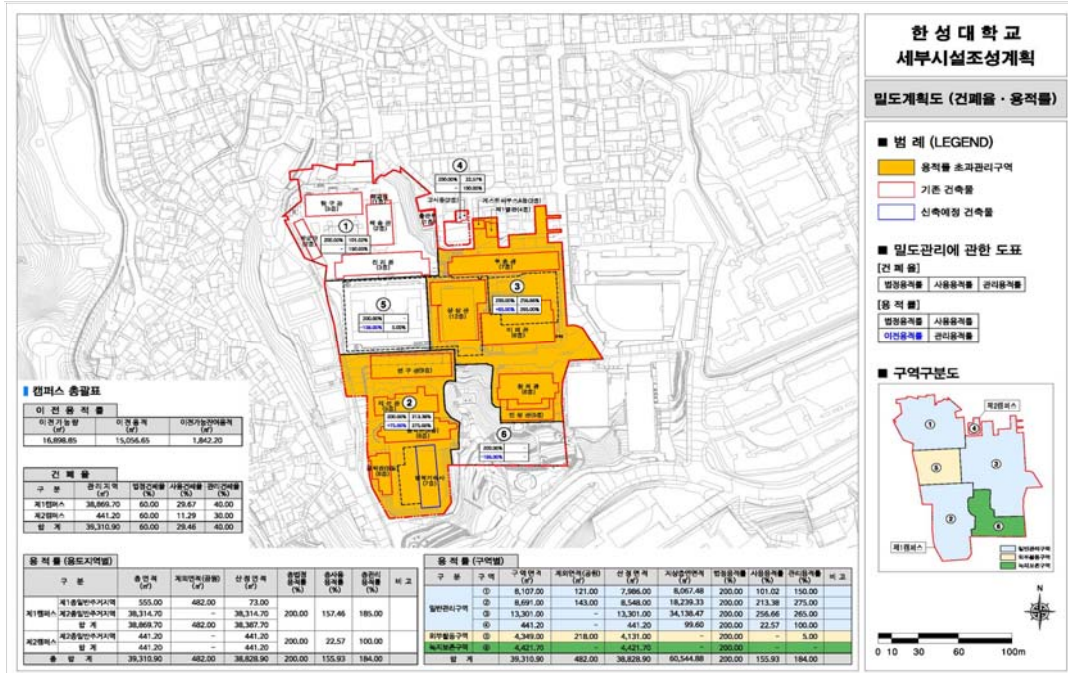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1) 및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전화 2241-276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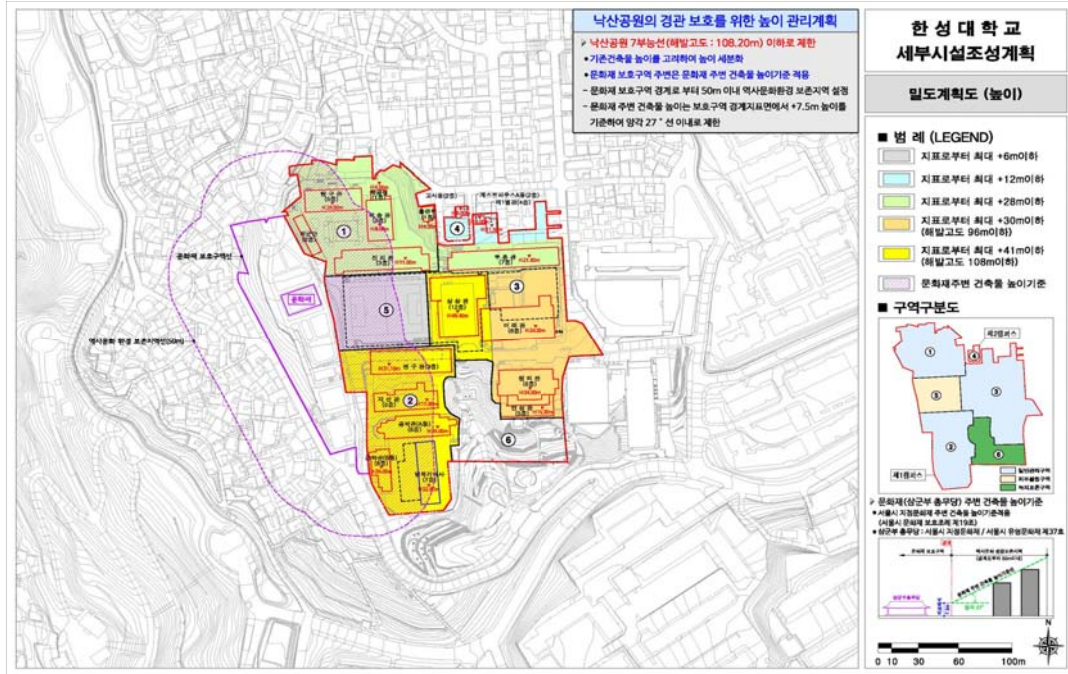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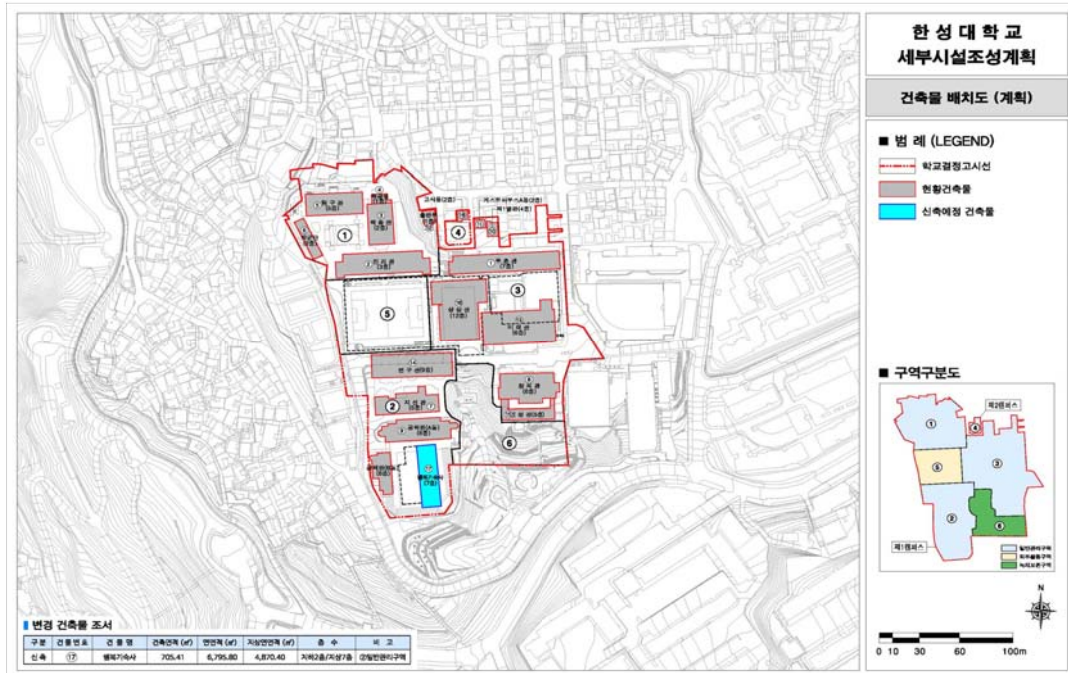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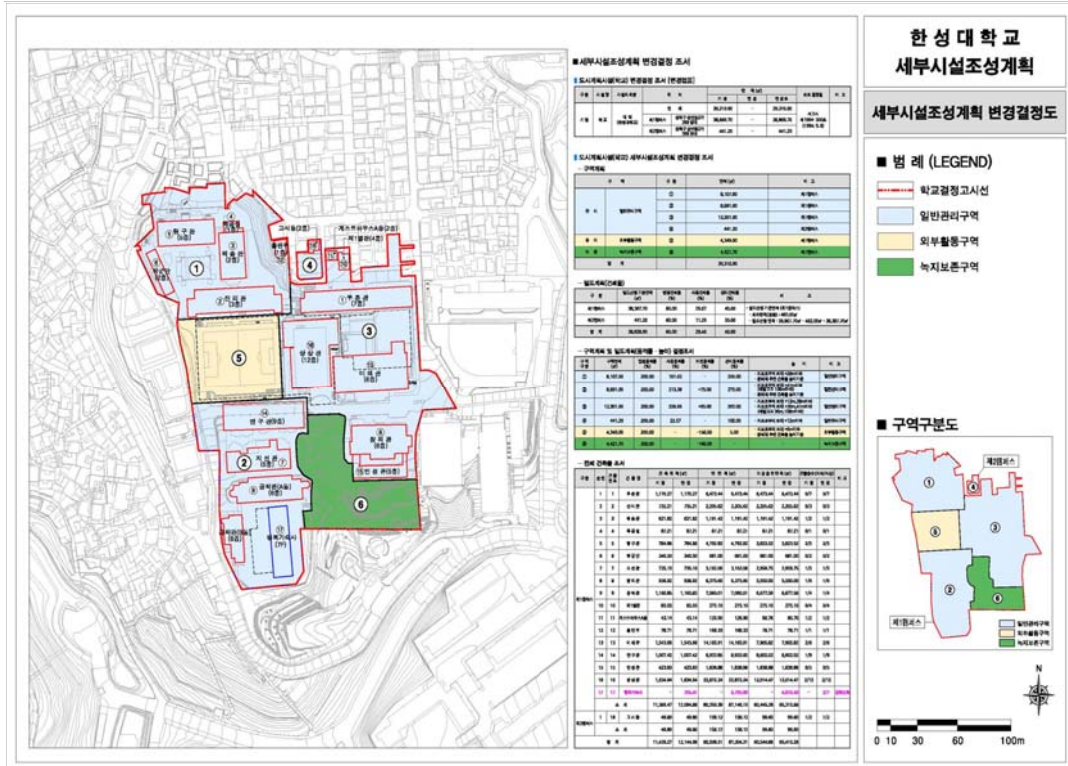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 (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배치도 (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1호

도시철도 역명 개정 확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역명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철도 역명 개정

연 번	노 선	역 명		비 고
		개 정 전	개 정 후	
1	2호선	신천	잠실새내	개 정

※ 역명 개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 정비공사는 '16.12.29일 완료 예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3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3호(2015.12.24.)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33차) 고시된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3410-7600)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주요 변경내용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6,7공구 개발기간 변경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6.12.31	2016.12.31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17.12.31	2017.12.31

※ 변경사유

- 일부 공사 진행중(진입도로 개설)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 국공유지 수용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I.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3)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3.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개발 목적 : 변경없음

- (1) 정부의 장·단기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 (2)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
- (3) 서울 대도시권 서북부지역 부도심 형성
- (4)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

- (5) 경제적인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라.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4. 개발기간 : 변경

- 가. 사업 착수일 : 1998년 6월 11일 : 변경없음
 나. 사업 준공일 : 변경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6.12.31	2016.12.31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17.12.31	2017.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Scale = 1/5,000) : 게재생략(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또는 SH공사 임대주택본부 계획설계팀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9. 상기 1~8항외 변경사항 없음.

II.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생략)
 2.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생략)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변경없음(생략)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 사 업 착 수 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사 업 준 공 일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6.12.31	2016.12.31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17.12.31	2017.12.31

6. 자금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7.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생략)
 8. 사업시행방법 : 변경없음(생략)

9.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10. 이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변경없음(생략)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생략)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변경없음(생략)
16. 사업시행지의 지적도 (Scale = 1/1,200) : 변경없음(생략)
17. 실시계획 평면도 (Scale = 1/5,000) : 변경없음(생략)
18. 상기 1~17항외 변경사항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3410-7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5호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9.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강남구 역삼동 한티역 일원에 대해 역세권지역 활성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원	-	증)41,495.8	41,495.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원	41,495.8	•역세권지역 활성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495.8	-	41,495.8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42.0	-	442.0	1.2	-
제3종일반주거지역	41,053.8		41,053.8	98.8	

나. 용도지구
1)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도곡동길 (대치1동~대치3동)	44,640 (3,355)	1,860 (281)	양측 12m	82.4.22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선릉로 (삼성동~도곡동)	24,000 (3,255)	1,000 (271)	양측 12m	82.4.22	

※ ()는 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m	집산 도로	281 (75)	역삼동 805-31	역삼동 755-8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1	12m	집산 도로	277	대로 1-22	대로 3-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	10m	국지 도로	130	역삼동 805-44	역삼동 805-4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2	10m	국지 도로	130	역삼동 805-36	역삼동 805-36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3	1	6m	국지 도로	135 (76)	역삼동 767-20	역삼동 805-4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6m	국지 도로	30	대로3-71	역삼동 765-3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3	4m	국지 도로	135	중로2-1	소로1-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4	4m	국지 도로	131	중로3-1	소로3-1	일반 도로			

주)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1	•도로신설 - 폭원 : 6m, 연장 : 76m	현행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 3-2	•도로신설 - 폭원 : 4m, 연장 : 135m	현행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 3-3	•도로신설 - 폭원 : 4m, 연장 : 131m	현행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나. 공간시설

■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 원	소공원	역삼동 765-30번지	262.3	-	262.3		
기정	2	공 원	소공원	역삼동 765-33번지	31.0	-	31.0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가구 결정 및 획지 결정 조서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번호	위 치	대지면적 (㎡)	계획면적 (㎡)	
신설	A1	4,108.5	①	역삼동 766 대	198.7	-	
			②	역삼동 766-1 대	277.8	-	
			③	역삼동 766-2 대	289.6	-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번호	위 치	대지면적 (㎡)	계획면적 (㎡)	
			④	역삼동 766-3 대	188.1	—	
			⑤	역삼동 766-4 대	220.2	—	
			⑥	역삼동 766-5 대	220.5	—	
			⑦	역삼동 766-6 대	163.7	—	
			⑧	역삼동 766-7 대	269.7	—	
			⑨	역삼동 766-8 대	873.2	—	
			⑩	역삼동 766-9 대	295.5	—	
			⑪	역삼동 766-10 대	308.0	—	
			⑫	역삼동 766-11 대	302.4	—	
			⑬	역삼동 766-12 대	302.4	—	
			⑭	역삼동 766-30 대	198.7	—	
신설	A2	4,093.8	①	역삼동 766-13 대	273.9		
			②	역삼동 766-14 대	284.5		
			③	역삼동 766-15 대	297.0		
			④	역삼동 766-16 대	272.9		
			⑤	역삼동 766-17 대	297.0		
			⑥	역삼동 766-18 대	251.3		
			⑦	역삼동 766-19 대	194.1	629.6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766-20 대	435.5		
			⑧	역삼동 766-21 대	300.7		
			⑨	역삼동 766-22 대	301.3		
			⑩	역삼동 766-24 대	302.4		
			⑪	역삼동 766-25 대	296.4		
			⑫	역삼동 766-26 대	260.9		
			⑬	역삼동 766-23 대	200.4	326.0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766-28 대	125.6		
신설	B1	4,173.0	①	역삼동 765 대	510.9		
			②	역삼동 765-1 대	791.4	811.9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765-29 대	20.5		
			③	역삼동 765-2 대	724.9		
			④	역삼동 765-5 대	463.1		
			⑤	역삼동 765-6 대	462.4		
			⑥	역삼동 765-7 대	679.8		
			⑦	역삼동 765-8 대	227.2		
			⑧	역삼동 765-9 대	292.8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번호	위 치	대지면적 (㎡)	계획면적 (㎡)	
신설	B2	6,186.1	①	역삼동 765-3 대	364.8	1,848.5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765-17 대	943.7		
				역삼동 765-18 대	222.0		
				역삼동 765-28 대	318.0		
			②	역삼동 765-10 대	666.2		
			③	역삼동 765-14 대	251.6		
			④	역삼동 765-15 대	871.8		
			⑤	역삼동 765-16 대	984.9		
			⑥	역삼동 765-22 대	636.2		
			⑦	역삼동 765-23 대	187.6	517.7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765-25 대	330.1		
			⑧	역삼동 765-26 대	409.2		
신설	B3	5,919.2	①	역삼동 765-32 대	5,919.2	5,919.2	특별계획구역
신설	C1	3,077.2	①	역삼동 756 대	390.7		
			②	역삼동 756-1 대	224.8		
			③	역삼동 756-2 대	224.6		
			④	역삼동 756-3 대	224.7		
			⑤	역삼동 756-4 대	224.7		
			⑥	역삼동 756-5 대	238.9		
			⑦	역삼동 756-6 대	241.1		
			⑧	역삼동 756-7 대	230.8		
			⑨	역삼동 756-8 대	230.8		
			⑩	역삼동 756-9 대	230.8		
			⑪	역삼동 756-10 대	222.0		
			⑫	역삼동 756-11 대	393.3		
신설	C2	4,838.0	①	역삼동 756-12 대	340.4	703.0	공동개발(권장)
				역삼동 756-13 대	362.6		
			②	역삼동 756-14 대	575.5		
			③	역삼동 756-15 대	588.8		
			④	역삼동 756-16 대	588.6		
			⑤	역삼동 756-17 대	588.7		
			⑥	역삼동 756-18 대	680.5		
			⑦	역삼동 756-19 대	1,113.3		

나. 자율적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전 구역	· 공동개발 지정/권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대지와 연접한 대지의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자율적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의 형 태가 부정형이 되거나 인접필지가 맹지 또는 부정형 대지가 되는 경우에는 불허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범위	계 획 내 용	비 고
불허용도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유해업소 - 판매시설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유해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주거환경 저해용도
	1층	주거용도시설(간선가로변)	
용도완화	전층	판매시설 2,000㎡ 미만 (20m 이상 도로 접도 의무 완화)	역삼동 765-1, 765-2, 765-3, 765-4, 765-5, 765-6, 765-7
권장용도 1)	전층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4) ●임대주택	
	특정층 2)	가로활성화용도 3)	

※ 상기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주 1)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지상층 연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지상층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노유자 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지상층 연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지상층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이상

2)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3) 가로활성화 용도 지정

- 1층 상업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아목, 자목
- 전시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4) 지역커뮤니티 시설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인정한 시설에 한함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가구번호: A1,A2,B1,B2,C1,C2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 : 230% 이하 •허용 : 250% 이하 •상한 1) 공공시설부지 제공(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 기준(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a)$이하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2)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치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8항)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2) 가구번호 : B3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5% 이하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높이계획

구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간선부	30m 이하	40m 이하	
이면부	25m 이하	30m 이하	
가구번호 B3 (역삼동 765-32)	-	75m 이하	특별계획구역

2) 기준높이 완화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권장용 도	전층	연면적의 20% 이상 수용시	• 기준높이 $\times$ (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 연면적) $\times 0.5$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수용시	• 기준높이 $\times$ (권장용도면적/바닥면적) $\times 0.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	• 기준높이 $\times$ {(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0.5$
쌈지형 공지		조성시	• 기준높이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0.5$
전면공지		조성시	• 기준높이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0.5$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 기준높이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0.5$
탐상형 건축물 배치		조성시	• 기준높이 $\times 0.05$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등 관련규정상 의무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에서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는 없음

3) 최고높이 완화

구 분	완화기준	완화내용
최고높이 완 화	공공시설 부지제공시	$(\text{기준높이} + \text{기준높이완화}) \times \{1 + (\text{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 / \text{당초의 대지면적})\}$

※ 완화된 최고높이는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방향	• 건축물의 방향(건축물 전면 또는 주출입구가 위치하는 방향)은 대지의 방향과 일치 권장 • 건축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3m	
	이면도로변	•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구역	비 고
건축물 외 관	외벽의 재료	• 주변 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 사용 권장	주요 간선도로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주요 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쇼윈도우 설치 및 조명시설의 설치 권장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경관 증진위해 하부 조명강화 유도	주요 간선도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1/2 이상 투시형 셔터 설치	주요 간선도로와 접한 1층부	
	개별점포의 폭원	• 입면분절요소 10m미만(3~8m권장)	주요 간선도로와 접한 1층부	
	경사지붕의 처리	• 건축물의 높이가 5층이하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은 가로경관 이나 옥상경관 향상을 위해 가능한 한 경사지붕 처리 권장	이면도로	
	색 채	•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 권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 체	
	생태면적률	•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 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로 친 환경 계획이 수립되도록 권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 체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 전면도로의 보도와 통합하여 보행공간 조성 - 차면시설, 설비시설, 적치물 금지 - 공작물·담장·계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금지	
전면공지의 유지·관리	• 건축물 전면에 조성되는 전면마당은 자연 그대로의 잔디조경 또는 흙마당으로 조성하고, 바닥 포장을 하는 경우는 자연친화적 재료에 의한 투수성 포장 • 전면마당에 조성되는 수목은 일조에 의해 생장이 큰 영향을 받으므로 건축물에 의한 음영으로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 • 화단내 조성되는 조경은 주민의 개별의사에 따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민협정으로 결정	권장 사항

나. 대지내 조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조경위치	• 오픈존(Open Zone)과 연계하여 전면가로로 조성	권장 사항
조경방식	• 조경부문은 지표면 돌출 지양(전면에 한함)	권장 사항

다. 담장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담장	• 가로에 접한 담장 허물기	
조경방식	• 가로에 면하지 않게 하고 이웃건물과 면하는 담장의 경우 투시형으로 투시율 80%이상(약 85%)으로 권장	권장 사항

라.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기존 옥외광고물의 정비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내용 준용하고 광고물이 외부에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당해 건축물이나 주변 건축물과 색채 이질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마.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공통(권장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연지반 보존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 권장	
옥상녹화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활용도 높이기 권장 계단탑 및 설비면적을 제외한 옥상면적의 4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 권장	
녹색주차장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치 권장	

바. 수자원절약등에 관한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자원 절약	중수도 등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	
에너지 절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이상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50% 이상 LED 전구사용	
도시 녹화	생태면적률 15% 이상(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은 10% 이상) 확보	
CPTED	방범등 및 CCTV 설치 (지속적 유지관리 및 범죄 발생 등 필요시 공공에 정보 제공 의무)	

사. 주민협정 등에 관한 사항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민협정 (권장사항)	가로활성화, 수자원절약, 방범등 및 CCTV 설치 등을 계획하는 경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주민참여 환경개선 프로그램등을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차량동선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 확보가 곤란할 경우 인접 대지와 공동주차 출입구 설치	해당구간 도면표현
차량출입 금지구간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내 차량 출입금지	해당구간 도면표현
주차장	•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하되, 잔디블럭, 자연석 등 환경 친화적인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 - 신축계획시 개방형 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 유도 • 이면부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를 지양 단, 대지의 특성과 현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조서

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완 화 기 준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X {(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3.0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2.0 ※필로티형일 경우 계수 1.5 적용
	쌈지형공지		• 기준용적률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2.0
주차계획	공동주차도로 및 출입구	준수시	• 기준용적률X0.1 ※간선가로변 공동주차 출입구 계획된 대지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 기준용적률X α [α=0.1(2필지),0.2(3,4필지)]
건축물용도	권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0.6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0.1 ※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 이상 설치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 연결도로 설치 등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0.2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설치시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 ÷ 연면적) X 4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인정한 시설에 한함.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세기준 모두 최고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공급률 20%초과 : 기준용적률 × 0.12 공급률 20%이하 15%초과 : 기준용적률 × 0.10 공급률 15%이하 10%초과 : 기준용적률 × 0.08 공급률 10%이하 5%초과 : 기준용적률 × 0.06 공급률 5%이하 3%초과 : 기준용적률 × 0.04		• 공급률 :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x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2		• 기준용적률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공통사항)

-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 용적률
 - 친환경 인센티브는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는 70% 이내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
-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 등 관련규정상 의무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 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치구)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 유사항목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시 허용용적률에서는 제외
- 공동개발 이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시, 기 공동개발 필지는 단독건축으로 보아 공동개발 이행필지 수에서 제외함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함(친환경 인센티브 = 친환경 항목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 법적의무 인센티브)
- 친환경 인센티브 2개 항목 의무 적용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특별계획구역 1 (역삼아이파크 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765-32번지 일대	-	증) 6,181.5	6,181.5	

2.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특별계획구역 1	• 기 개발된 공동주택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정비계획을 따른다.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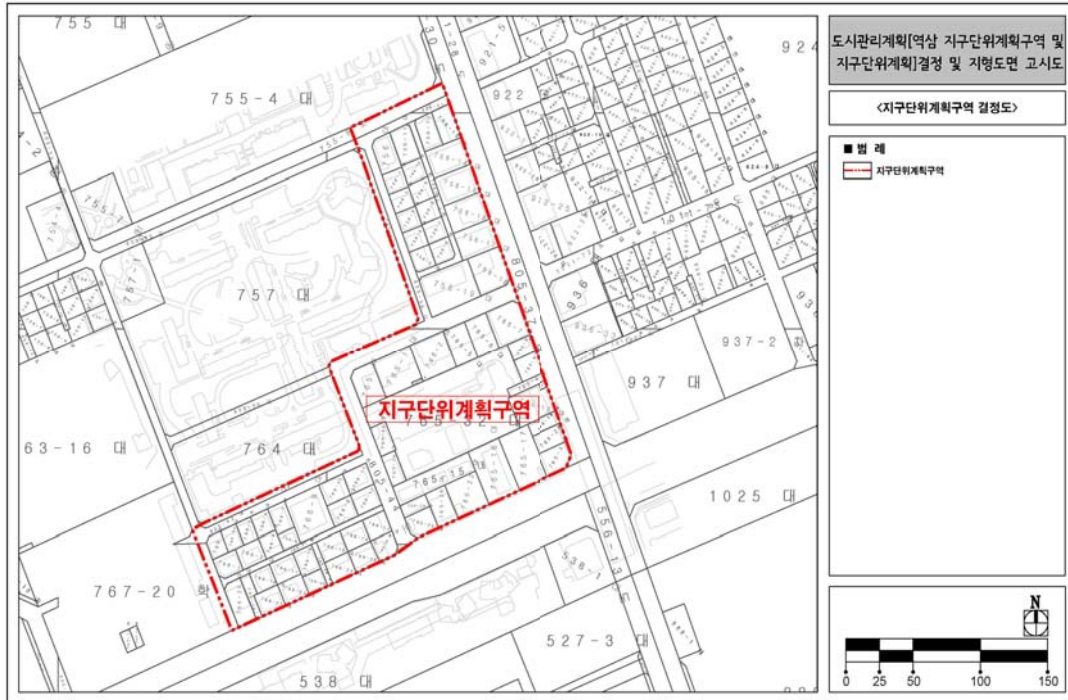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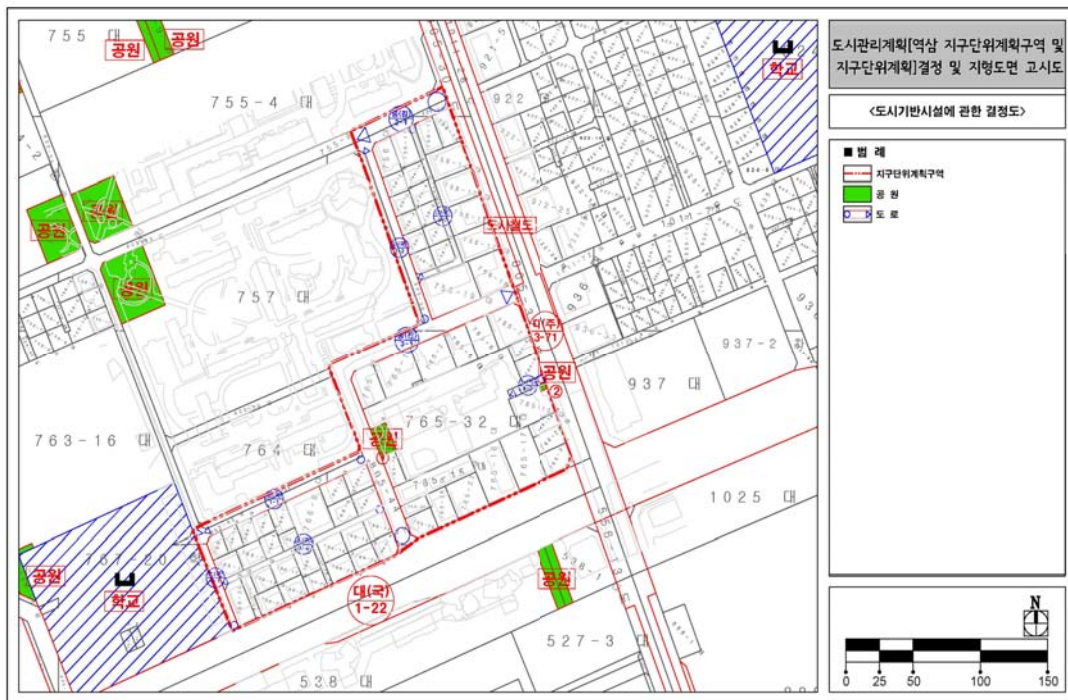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 (☎ 02-3423-61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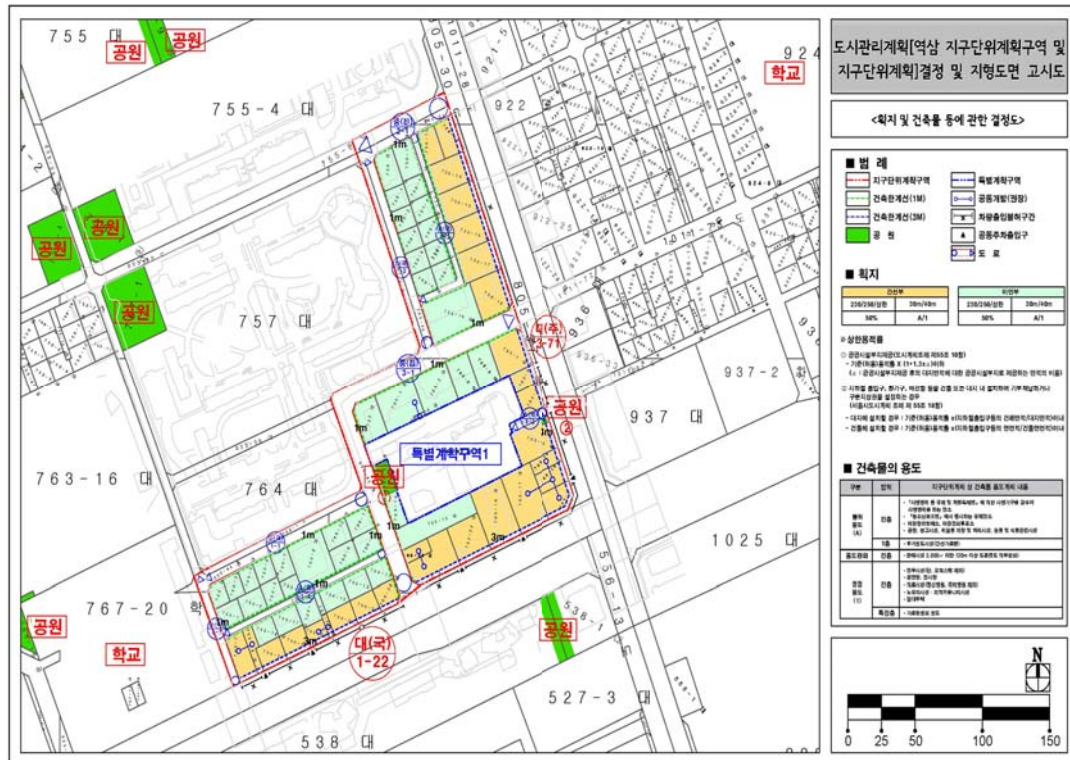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03.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1호(2015.10.1.)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 신·증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 학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3,895,659	-	3,895,659	건고시-124호 (1970.03.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변경 없음]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29,725	외부활동구역	②	53,884
	③	236,586		④	145,853
	⑤	257,508		⑫	61,523
	⑧	77,618	상징경관구역	⑦	71,871
	⑨	80,790	소 계		333,131
	⑩	152,510	녹지보존구역	⑥	47,410
	⑪	147,616		⑭	2,313,069
	⑬	119,696	소 계		2,360,479
소계		1,202,049	합 계		3,895,659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법정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76,122	60.00	19.79	19.83	21.79	
자연녹지지역	1,623,783	20.00				
계	1,699,905	21.79				

※ 학교용지 면적(3,895,659㎡) 대비 법정건폐율 20.47%, 사용건폐율 8.65%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①	125.00	86.44	86.44	-	12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②	103.00	7.65	7.65	- 83.00	20.00	• 지표로부터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정문, 대운동장 등)
③	100.00	89.04	89.04	-	10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④	100.00	-	-	- 100.00	-	-	외부활동구역 (국수봉)
⑤	101.00	116.25	116.25	+ 49.00	15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	-
⑥	100.00	-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0	91.99	91.99	-	10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상징경관구역 (본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규장각)
⑧	100.00	107.82	107.82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⑨	100.00	122.96	123.09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⑩	100.00	116.62	116.62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⑪	100.00	73.60	73.60	-	10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녹지연접지 16~30m 이하	-
⑫	100.00	1.29	1.29	- 98.00	2.00	• 오픈스페이스 구역에 부합되는 높이 관리 : 표고 +16m이하	외부활동구역 (버들골)
⑬	100.00	93.01	94.13	-	100.00	• 지표로부터 16~40m 이하	-
⑭	100.00	0.063	0.063	캠퍼스지역 비오톱2등급지 일부 이전	0.063	• 기존 건축물 개축 허용	녹지보존구역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9 구 역	정구장 관리실	-	-	-	57.60	-	-	-	109.60	-	-	-	109.60	-	지상 2층	신축
13 구 역	화학공정 신기술연구소	-	-	1,347.31	1,989.74	-	-	3,971.42	5,309.76	-	-	3,971.42	5,309.76	지상 5층	지상 5층	증축
소계		-	-	1,347.31	2,047.34	-	-	3,971.42	5,419.36	-	-	3,971.42	5,419.36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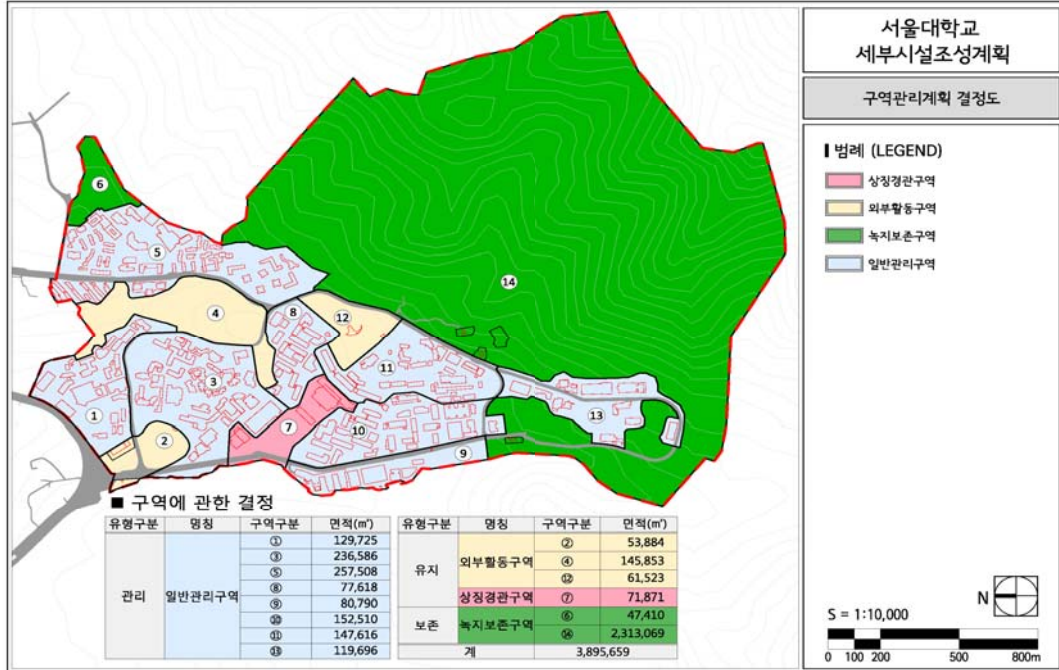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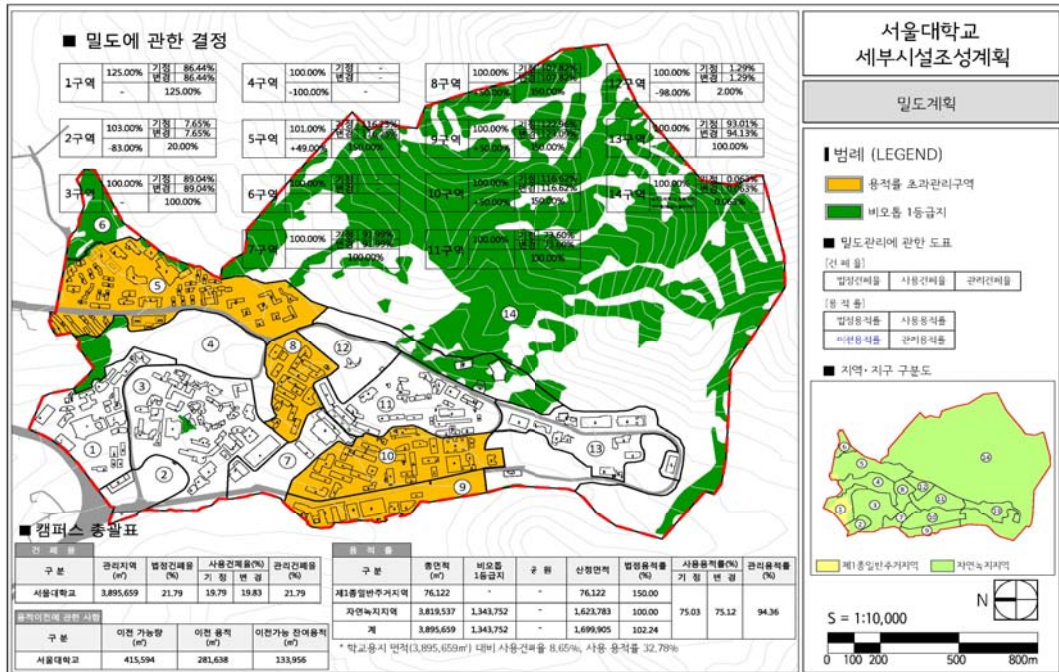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전화 879-6371)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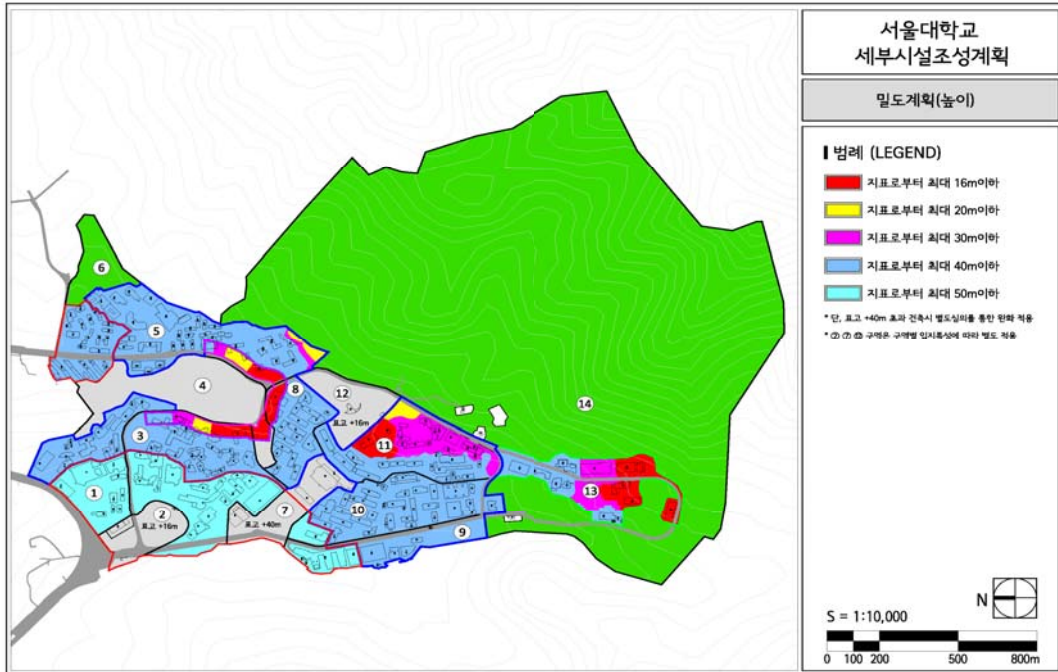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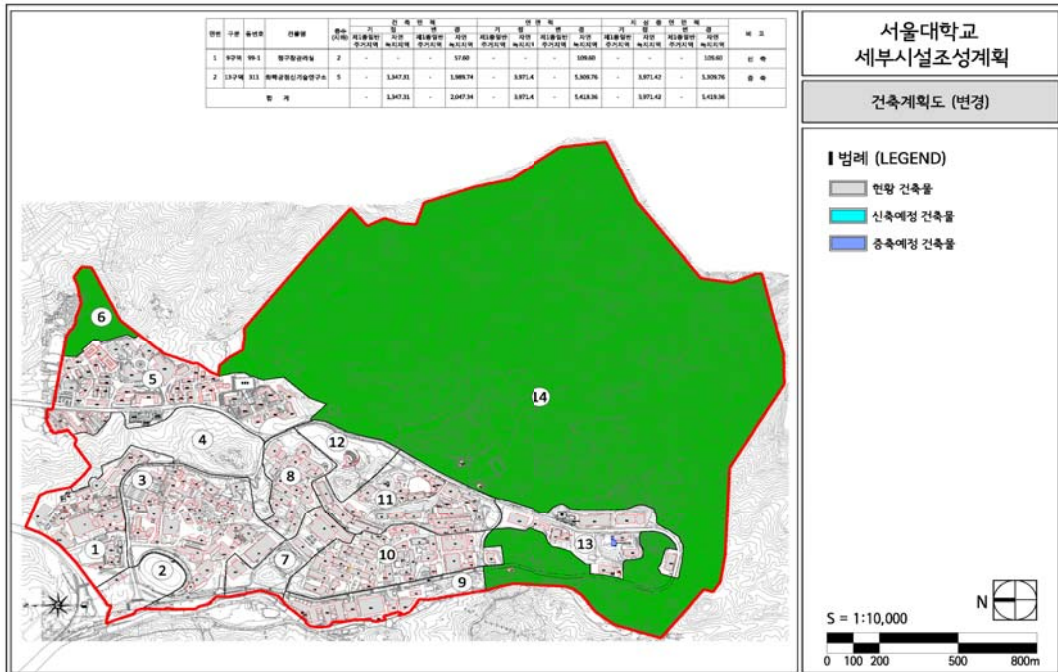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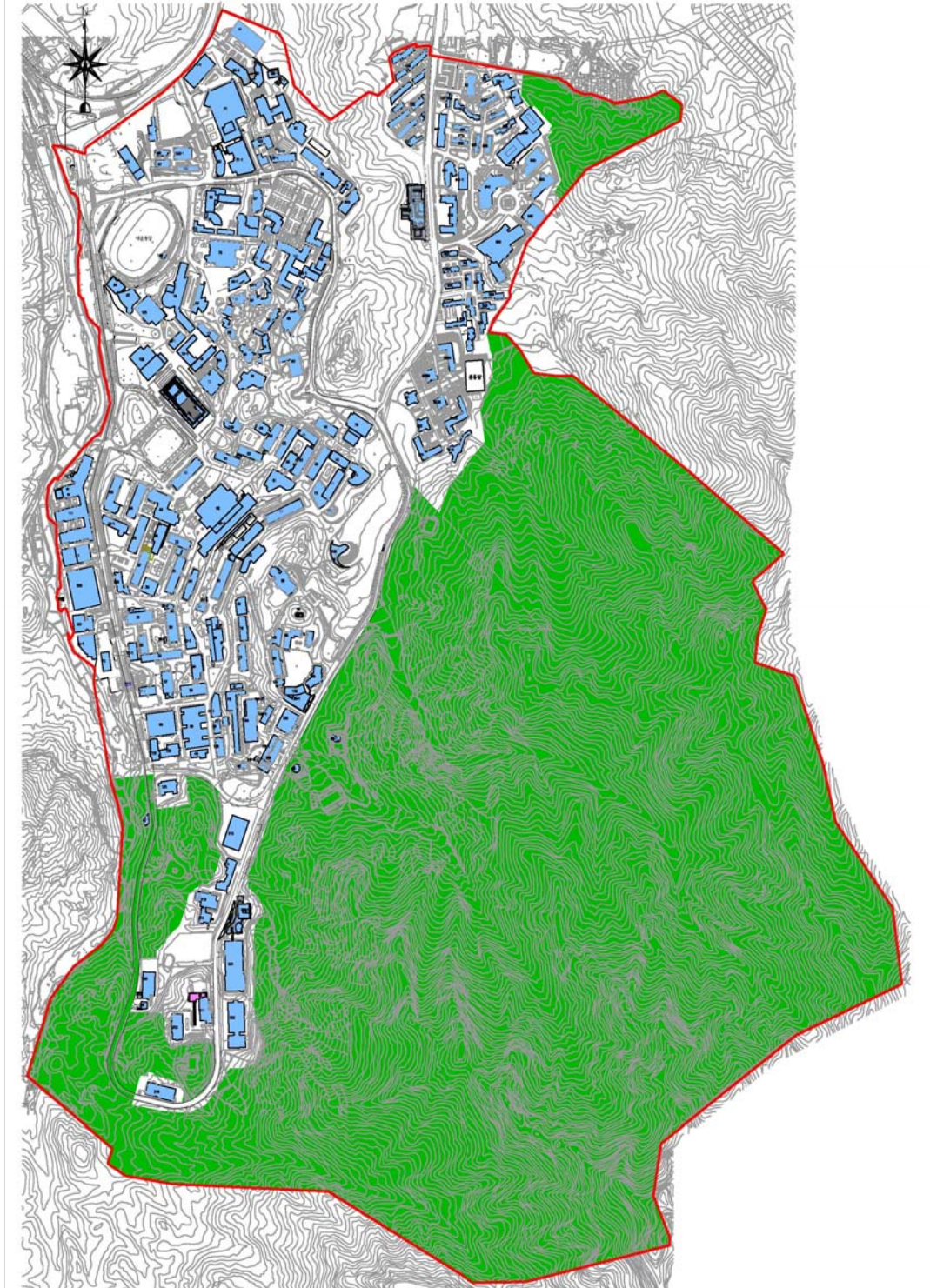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1호(2005.11.17)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5호(2008.04.03) 및 제2011-190호(2011.07.14), 제2013-66호(2013.03.07), 제2013-170호(2013.05.30), 제2014-405호(2014.11.27), 중구고시 제2015-24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6호(2015.06.11), 중구고시 제2015-44호(2015.06.25), 제2015-63호(2015.08.06), 제2016-85호(2016.09.29)로 변경결정 고시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1.0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명동1가 59-5번지 외 8필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	300,545	-	300,545	2005.11.17. (서고제2005-351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계획
 - 1) 불허용도 (변경없음)
 - 2) 지정용도 (변경)

■ 지정용도 결정조서

기정	전층	용도분류기호	가구31, 획지2	가구12, 획지11		비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변경	전층	용도분류기호	가구31, 획지2	가구12, 획지11	가구7, 획지1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시에만 적용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주1) 지정용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에 한하며,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0% 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 지정용도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정용도	• 가구7, 획지1의 지정용도 신설	•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다.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간선부	간선부 (가구31 획지2, 가구12 획지11 제외)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가구31 획지2	600%이하	9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구12 획지11	600%이하	9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이면부	이면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름

■ 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간선부	간선부 (가구31 획지2, 가구12 획지11, 가구7 획지1 제외)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가구31 획지2	600%이하	9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구12 획지11	600%이하	9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구7, 획지1	600%이하	800%이하	1,117.02%이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적용
이면부	이면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름

※ 가구7, 획지1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따라 지정용도의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을 반영한 상한용적률 1,117.02% 이하 적용(객실비율 8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용적률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상한용적률	가구7, 획지1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2) 용적률 완화 (변경없음)

라. 높이계획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4.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계획

구분	항목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공개공지	중구 명동1가 59-5번지 일대	1개소 신설	• 이면도로(명동3길)변 위치 지정	지침도 참조
	보행공간		2m	• 남측 인접대지경계부에 보행공간 확보	

■ 대지 내 공지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개공지	• 가구7, 획지1의 공개공지 신설 및 위치지정	• 이면도로(명동3길)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개공지 조성
보행공간	• 가구7, 획지1의 보행공간 신설	•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간 연결가능한 보행공간 확보

5.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III.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심의의견
• 밀도증가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존 주차대수(148대) 이하로 계획 • 건축심의회 남대문로변의 저층부는 적정 폭원 및 높이의 필로티를 조성하고 그에 맞게 명동지하쇼핑센터 출입구를 후퇴시켜 보행환경 개선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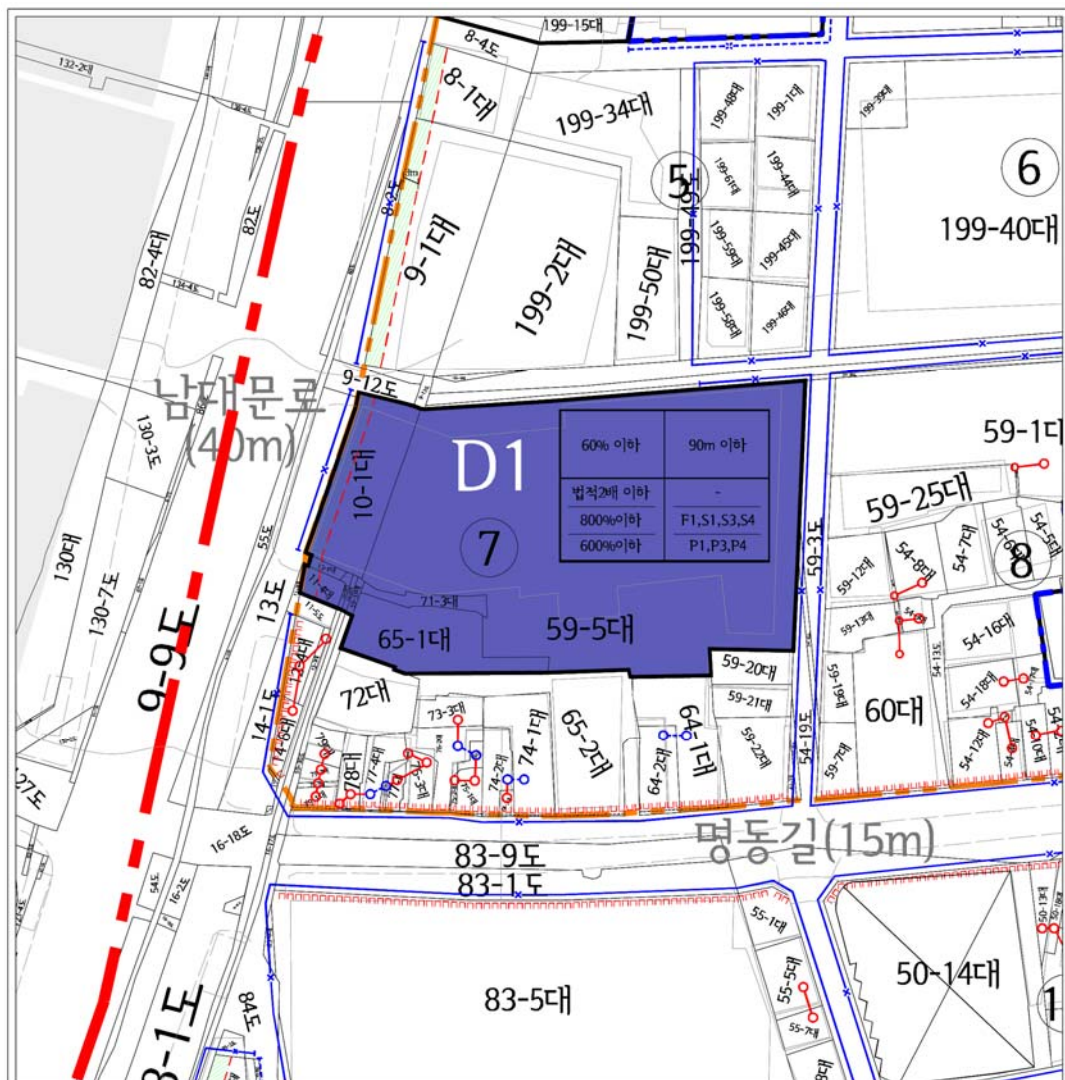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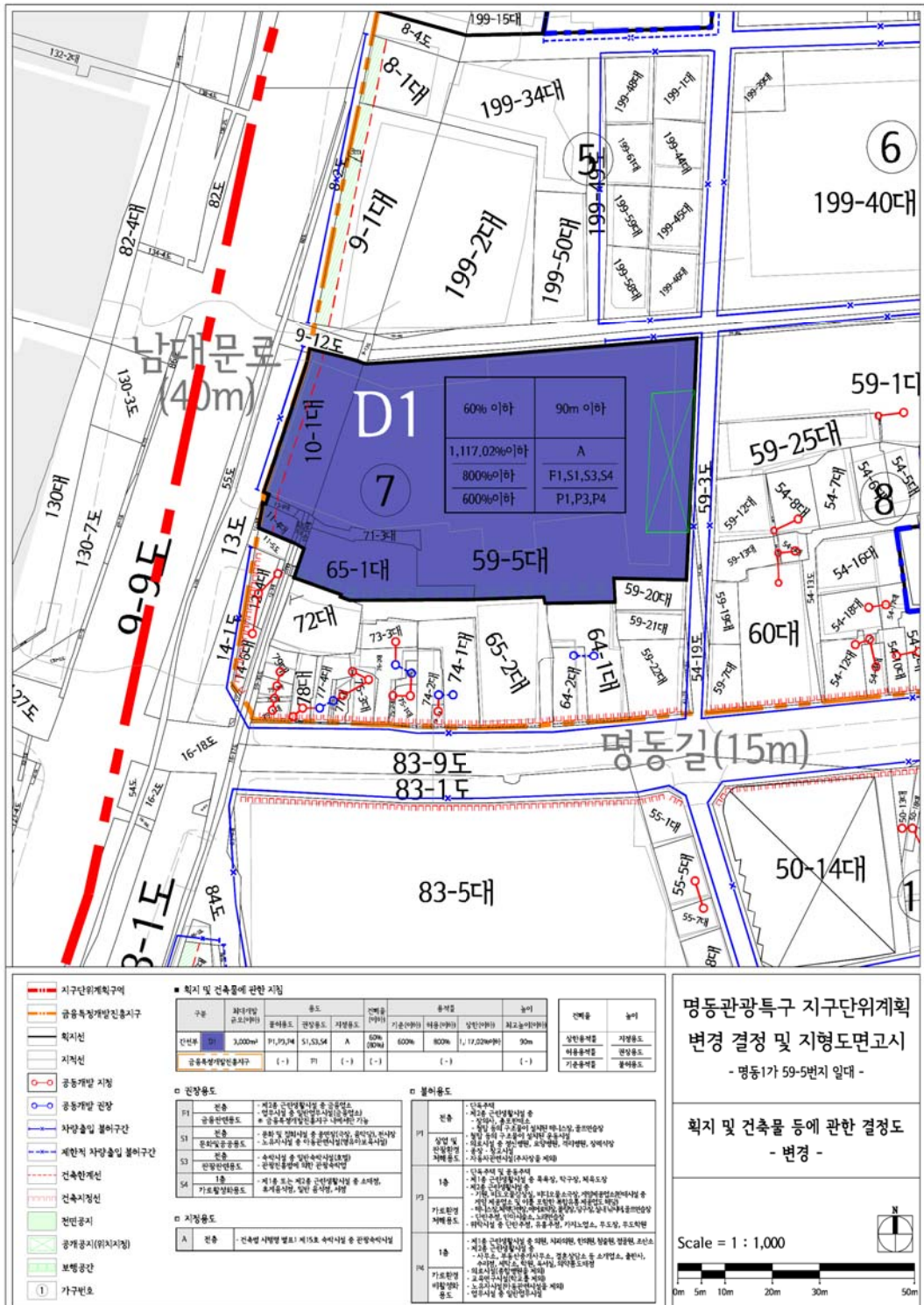
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illegibl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호(2016.1.14.)로 결정(변경)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계획취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내 서울역파출소 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변경) 사항임

2.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경미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변경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36,880	감) 293.49	3,436,586.51	
2	변경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2가 122 및 용산구 동자동 43-205 일원	235,000	감) 293.49	234,706.51	

나. 변경사유

- 서울역광장~고가 연결시설물(승강기, 계단) 설치 및 서울역파출소 신축 등 (구)서울역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16.10.12) 사항 이행을 위해 서울역파출소 신축대지에 대해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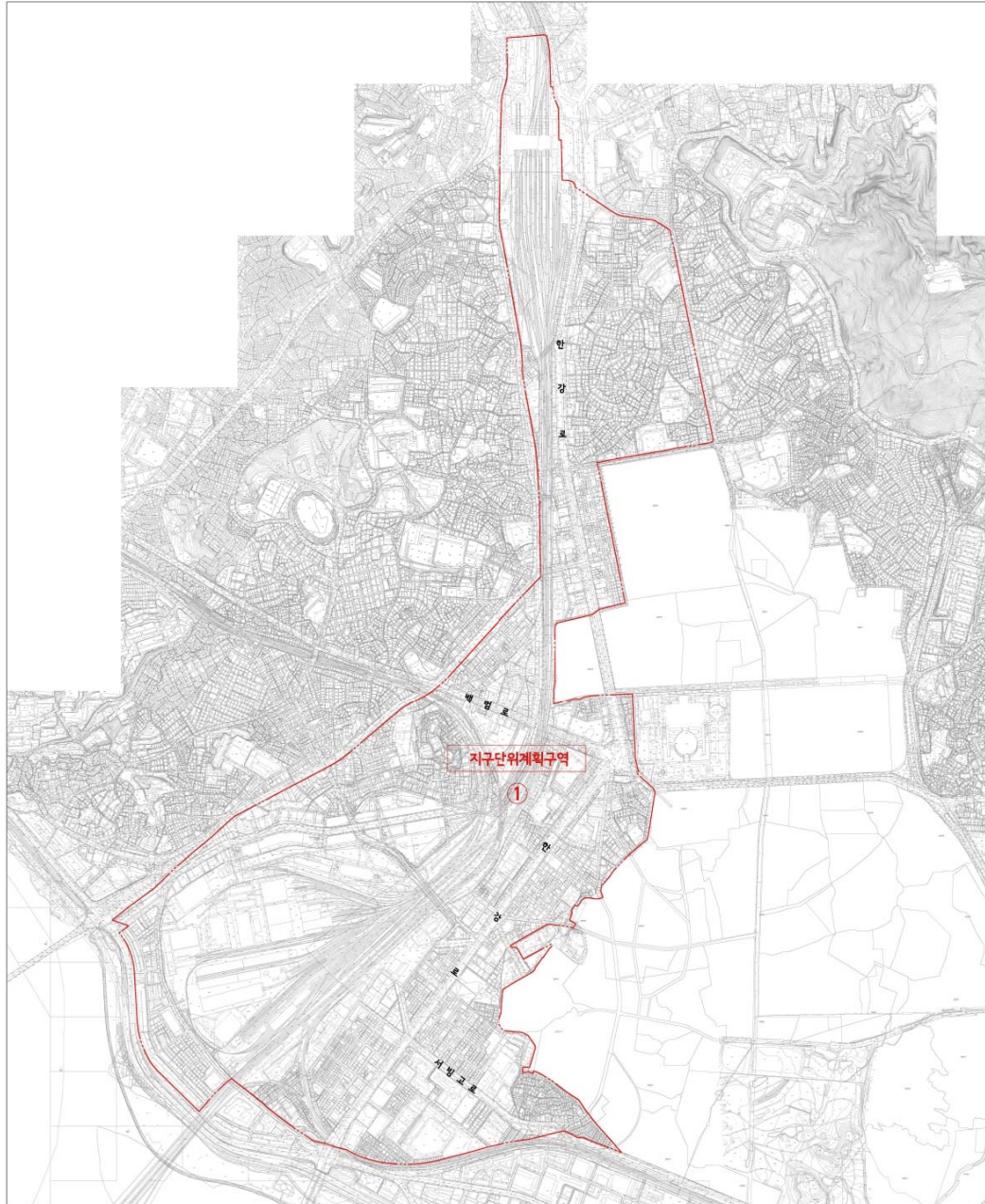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2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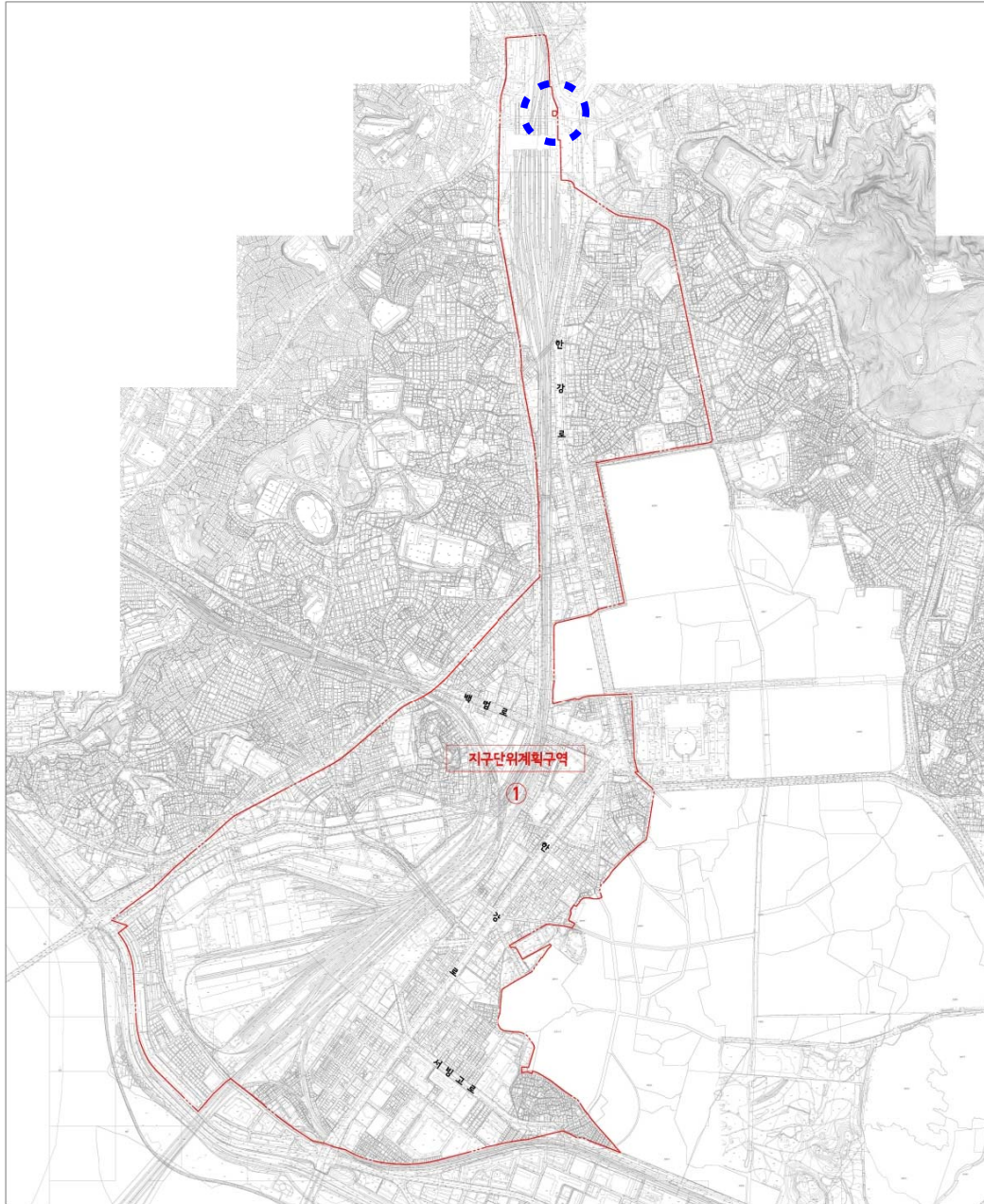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0 100 200 400 800m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용산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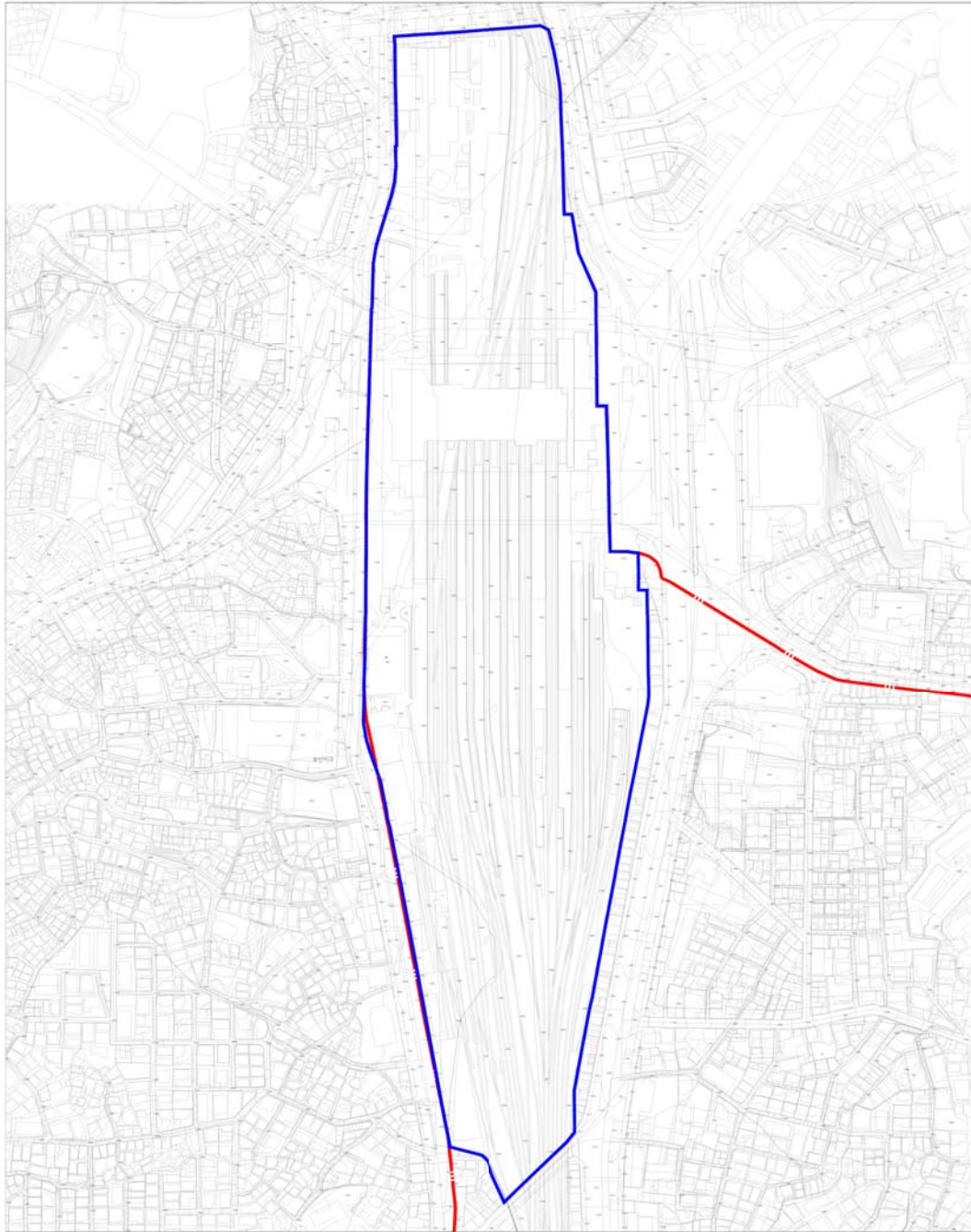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0 100 200 400 800m

□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서울역 역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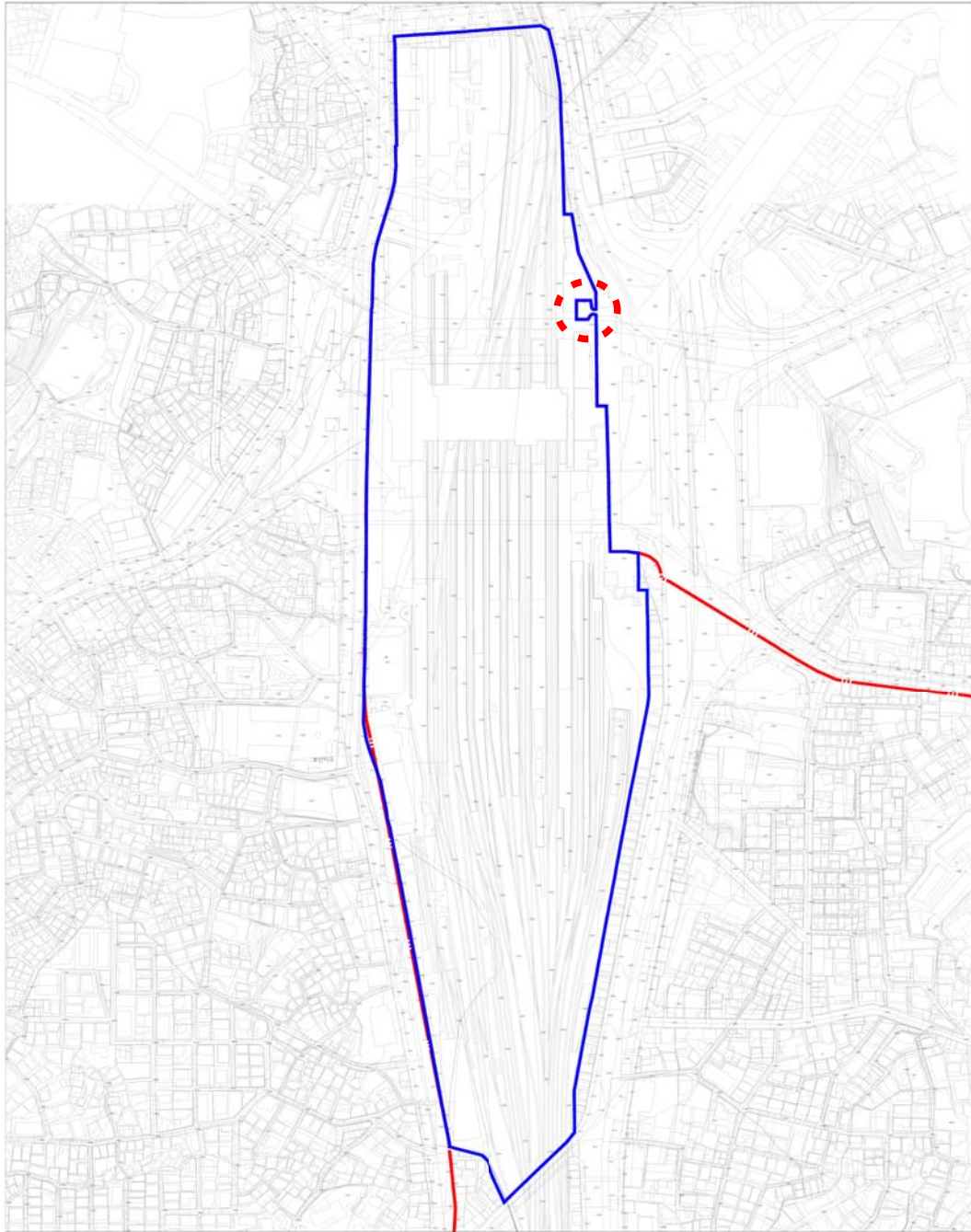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S=1:5,000

0 100 200 400 800m



□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용산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서울역 역사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S=1:5,000

0 100 200 400 800m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75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에 대하여 통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제 재 기 간 : 2016.12.01.~2017.04.30.(5개월)
3. 기 타 사 항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우편번호:07062/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동)/ 전화번호: 02-3146-4441/담당자:정은희			
문서번호: 발 신 일: 2016.11.24. 수 신: 주식회사 지브이산업 대표 조근철님 참 조: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지브이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10-81-96307
			법인등록번호 110111-4658245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0길 1-2, 1층(대조동)	
	대표자	조근철	주민등록번호 82.11.06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1길 9-2(북가좌동)	
	영업종목(세부품목)	도로용품제조 등	면허·등록번호 등
제 재 내 용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8.가.(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해약연월일	2016.07.25	
	제재연월일	2016.12.01	만료연월일 2017.04.30
	제재기간	2016.12.01. ~ 2017.04.30.(5개월)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상기업체는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마이크로 풍력발전설비 구매」 계약이행 도중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장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80호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86-265호(1986.06.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설부 고시 제130호(1987.04.1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호(2016.01.07.)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2016.2.4.)로 실시계획 고시된, 보라매근린공원 내 『보라매근린공원 현장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외 1개 공사』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T02-2181-1157) 및 공원운영과(T02-2181-1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보라매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보라매근린공원 현장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공사
 - 보라매근린공원 반려견놀이터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착공일자	층수 및 용도	연면적	시설면적	비 고
현장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공사	2016.03.07	지상1층(창고) 지상2층(대기실)	465.90㎡	391.28㎡	별동 신축
반려견놀이터 조성공사	2016.02.01	-	-	1,300㎡	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 주 소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6. 12. 31 까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81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산84-5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다.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수도 공급설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84-5	2,040	증)1,157	3,197	서울특별시 고시-329호 (1990.10.12.)	수유6 배수지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수도공급설비 (수유6배수지)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기정 : 2,040㎡ 변경 : 증)1,157㎡ 변경후 : 3,197㎡	- 무단수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시설용량 확 충 (증 653㎡) - 기정 면적 오류 수정 · 고시면적 : 2,040㎡ · 실측면적 : 2,544㎡(증 504㎡) - 합계 : 증) 1,157㎡

라. 관련도서 : 열람장소(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 비치

마.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07) 및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02-3146-1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8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6.11.11.	310593	(주)에코아이 전종수 160111-0188262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비동 1503호,1054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2016.11.29.	150048	(주)태정이앤아이 정태용 110111-6203585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1, 928호(가양동, 이스타빌2차)
3	2016.11.30.	202305	에이피위성(주) 류장수 110111-453104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가산동, 롯데아이티캐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611	2016.11.08.	(주)스카이코어 최명훈 110111-4977546	서울 송파구 총민로 66,티-6112호 (문정동, 가든파이버라이프)
2	202612	2016.11.14.	(주)위트인포 송병훈 110111-4 0 8 7 5 7 7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212호, 213호, 214호 (여의도동, 라이브콤비빌딩)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3	202613	2016.11.15.	(주)중외정보기술 이정하 110111-1808306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비동 1001호(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4	202614	2016.11.18.	(주)엔트론 이민이 110111-6169240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9길 3, (대림동)
5	202615	2016.11.18.	(주)엠에스시스템즈 문대성 131111-0323863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비동 310호(양평동5가,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6	202616	2016.11.21.	(주)토마토시스템 이상돈 110111-2099425	서울 강남구 논현로128길 5, 5,6,8층(논현동, 장뿔빌딩)
7	202617	2016.11.21.	(주)아이플러스텍 김성철 110111-5661768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1, 10층 에이-10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1)
8	202618	2016.11.24.	(주)아이티앤에스 김세영 110111-6198893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14 (신내동)
9	202619	2016.11.24.	(주)컨텍솔루션 최기석 110111-6 0 6 6 1 0 7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511-2호 (안암동5가, 미래기술육성센터)
10	202620	2016.11.29.	리딩포인트(주) 백한석 110111-326961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8층(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신관)
11	202621	2016.11.29.	(주)현대아이티 장제만 110111-5273498	서울 강동구 상일로10길 36, 5층(상일동)
12	202622	2016.11.29.	(주)에스엠텔레콤 오현택 110111-45474863	서울 노원구 동일로242길 123, 2층(상계동)
13	202623	2016.11.29.	(주)한국심트라 김학성 110111-1457989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1117호, 1118호, 1119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1-2)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8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이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주소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 12. 15.(목) ~ 2016. 12. 28.(수)

2. 공고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옥토종합건설(주) (이영수)	건축공사업 01-1657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신월동) (성창빌딩 304호)	○사업자 등록 폐업 등록번호 : 117-81-43908 폐업일자 : 2016.3.31.	등록말소 (2016.12.31.)	건설산업 기본법 83조 제12호
2	(주)이노하우징 (문성국)	건축공사업 01-1936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81 (문래동4가)	○사업자 등록 폐업 등록번호 : 214-86-77397 폐업일자 : 2016.7.14.	등록말소 (2016.12.31.)	건설산업 기본법 83조 제12호
3	히스종합건설(주) (배철수)	건축공사업 13-024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8-127 5층 (피앤피빌딩)	○사업자 등록 폐업 등록번호 : 122-81-83111 폐업일자 : 2015.10.6.	등록말소 (2016.12.31.)	건설산업 기본법 83조 제12호
4	(주)네모건설 (이호상)	건축공사업 01-2624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91-12, 101	○사업자 등록 폐업 등록번호 : 109-86-13903 폐업일자 : 2016.5.23.	등록말소 (2016.12.31.)	건설산업 기본법 83조 제12호
5	청진이앤씨(주) (정판진)	건축공사업 01-2924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역삼동 에스제이빌딩 4층)	○사업자 등록 폐업 등록번호 : 220-87-95397 폐업일자 : 2015.12.31.	등록말소 (2016.12.31.)	건설산업 기본법 83조 제12호

3. 기타사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고하였습니다.
- 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한 청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명의, 등록증 등 대여행위 위반, 영업정지처분 위반, 부실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90호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kW · 년)
2017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2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2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 동일 지면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면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0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7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공고한 날부터 30일간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접수처 :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부서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1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기념물 지정 계획

- 지정 예정 종별 : 서울특별시 기념물
- 지정 예정 명칭 : 배봉산 보루(拜峰山 堡壘)
- 문화재 지정대상
 - 동대문구 전농2동 배봉산 정상부 주혈군과 적석군
 - 토지 : 3필지, 총면적 1,243㎡

지정 대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조성 연대	관리청	관리단체
배봉산 보루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	임야	1,237	삼국시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3	〃	3		국유 (산림청)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4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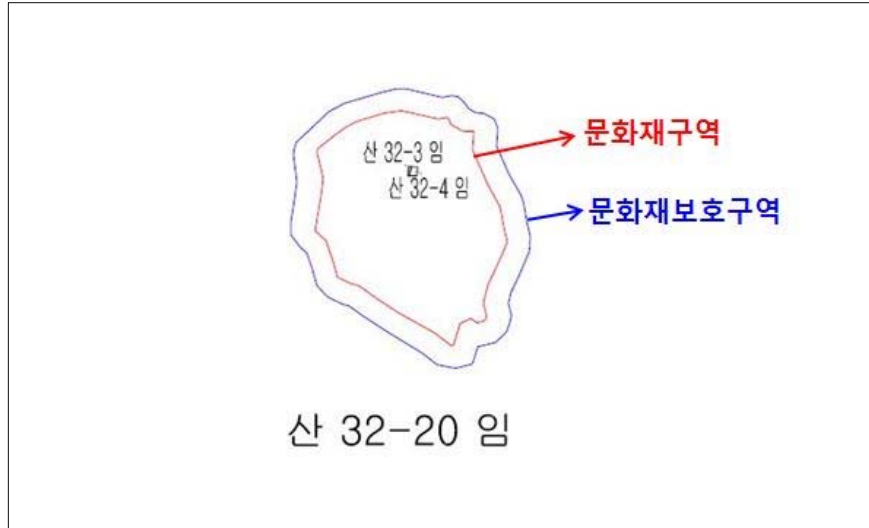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 토지 : 1필지, 총면적 693.2㎡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관리청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	임야	149,676	693.2	서울특별시

○ 공고 사유

- 3열의 주혈군과 그 바깥쪽으로 조성된 석축기저부, 보강토 등으로 구성된 본 유적은 삼국시대 석축성의 기저부 유구로서, 나무 기둥을 설치하여 토축을 조성한 뒤 석축으로 외벽을 마감하는 고구려식 축성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축조기법은 아차산4보루, 흥련봉 보루 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성곽의 축조기법과 동일함. 뿐만 아니라 인근에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보루와 연결되면서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삼국시대 관방유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기저부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므로 본 유적을 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함

○ 기념물 지정 계획 도면



▲ 배웅산 보루(동대문구 전농동 산32-3/4/20번지)
: 붉은색 선은 문화재 구역, 파란색 선은 보호구역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0
 -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 2127-4704
 - ② 우편 :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념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념물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기념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제24조(신고사항) 및 제26조(행정명령), 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제55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제20조(허가신청)·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

의 적용 대상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 적용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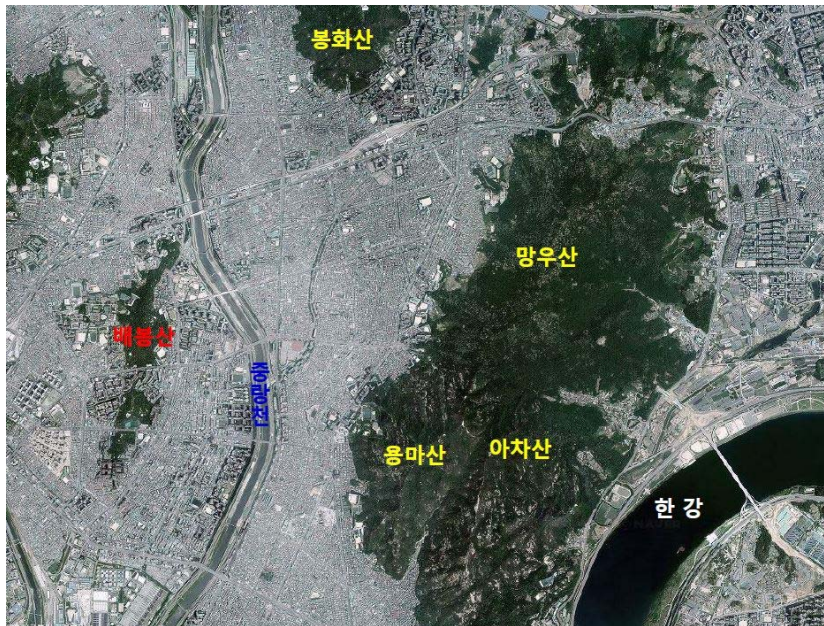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배봉산 보루> 조사 보고서

첨부자료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배봉산 보루> 조사 보고서

<배봉산 보루> 유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2동 산 32-20번지에 소재한 배봉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배봉산(110m)은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용마산(348m), 아차산(295m), 망우산(282m)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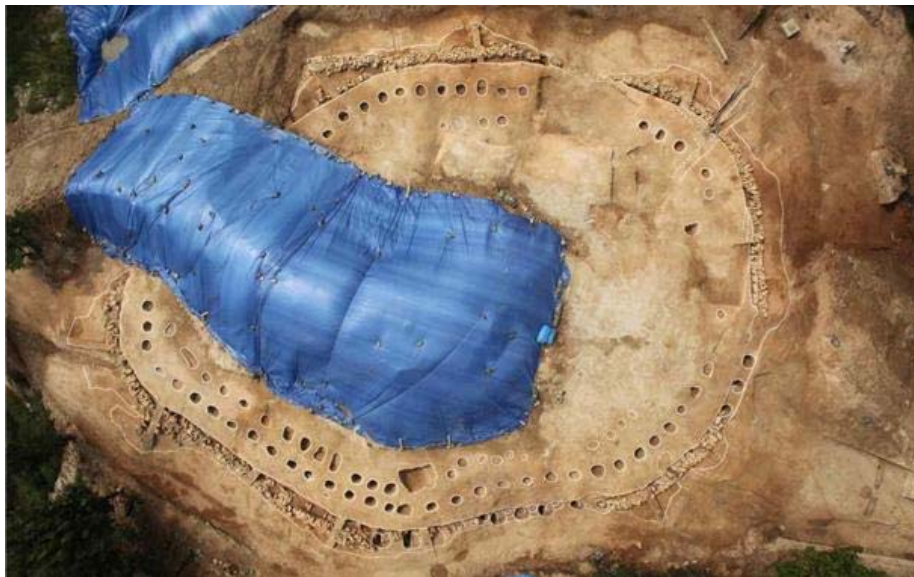
▲ 배봉산은 기존에 고구려 석축성들이 확인된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 보루 유적들과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그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2015년까지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역으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배봉산 정상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16.8.11~'9.12./ 총 2,935㎡ 발굴조사) 과정에서 해당 유적이 확인되었다.



▲ 배봉산 정상부에 자리잡은 유적 전경

비록 배봉산 정상부에 자리잡고 있던 군사시설을 철거 과정에서 원지형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으나, 사면을 따라 타원형의 주혈군과 적석군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혈군은 대략 3열을 이루며, 원형 안쪽에 위치한 3열에 비해 1·2열이 깊고, 1·2열 주혈 대부분에서 내부에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 정상부에 위치한 주혈군과 적석군

주혈군의 바깥쪽에는 정상 사면부를 따라 사면과 평행한 형태의 석렬이 너비 1m내외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할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북쪽 사면부 등에서 확인된 석열의 경우 비교적 잘 다듬어진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외부를 쌓아올린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유적은 삼국시대 토석이 혼축된 성벽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나무 기둥을 먼저 설치하고 토축부를 조성한 후 석축으로 외벽을 마감하는 형식으로서 이는 고구려 ‘토심석축공법’의 전형적인 양식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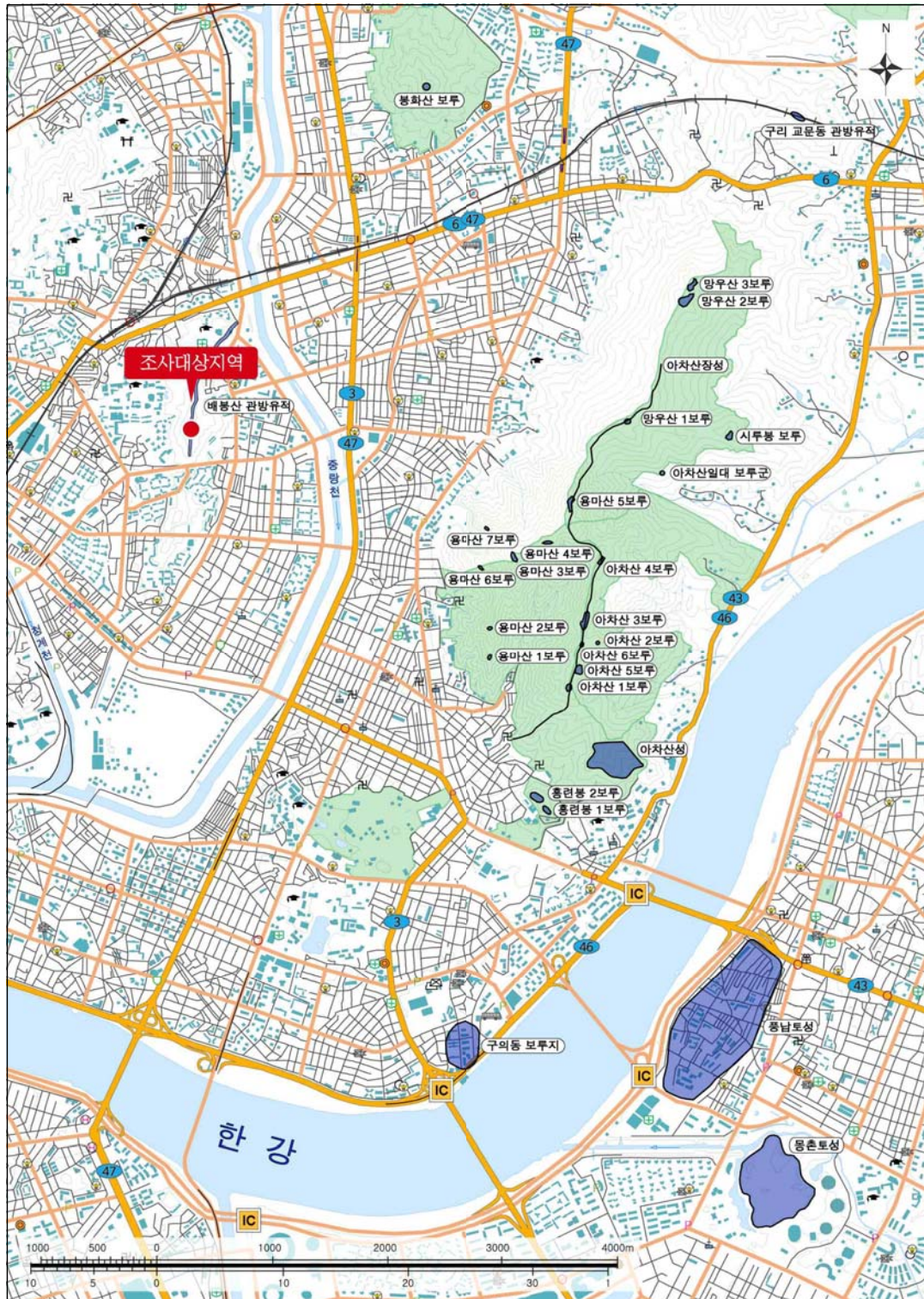
▲ 동사면 성벽 기저



▲ 북사면 석열

▲ 북사면 석열 확대

이러한 축조기법은 아차산 4보루, 홍련봉 보루, 시루봉 보루 등 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 성곽과 동일한 것으로 <배봉산 보루>가 한강 유역의 방어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고구려의 보루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기발굴된 고구려 성곽 유적과 배봉산 보루

특히 <배봉산 보루>는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삼국시대 관방 유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접한 아차산, 용마산, 시루봉과 흥련봉 보루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규모가 작고 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에 자리잡고 있던 현대식 군사시설로 인해 보루 내부는 교란되어 건물지나 배수시설 등의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경사면을 정리하여 석축을 쌓고 그 안쪽을 흙과 돌로 채워넣는 축조방식은 기존의 아차산 보루와 동일하다.

발굴된 유물로는 타날문 토기편과 경질 토기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유물이 혼재되어 있으나 금속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배봉산 보루에서 발굴된 토기편

<배봉산 보루>는 인접한 보루군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성벽 기저부가 잘 남아있으며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고구려 관방유적으로서 중랑천 동쪽에 있는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보루들과 축성 기법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아 고대 서울지역에서 삼국의 역사적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므로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 이산곡㈜	김재천	2016.11.04.	서울160076	서초구 강남대로 331(서초동)	5,0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2	위일종합건설(주)	박종기	2016.11.04.	서울160077	서대문구 연희로 220(연희동)	1,750,000	신규등록
3	(주)필건설	이승준	2016.11.07.	서울160078	서초구 동광로 56-9, 201호 (방배동, 보우빌딩)	500,000	신규등록
4	(주)에스디피디	어상수	2016.11.11.	서울160079	강남구 테헤란로20길 9, 1101호 (역삼동, 동궁빌딩)	300,000	신규등록
5	(주)코람코가치부가형리 테일제1호위탁관리자부 동산투자회사	(주)코람코 자산신탁	2016.11.22.	서울160080	강남구 삼성로 511, 1층 (삼성동, 골든타워)	5,000,000	신규등록
6	(주)노블자산개발	박병중	2016.11.16.	서울160081	강남구 언주로 651, 8층 (논현동, 삼원빌딩)	300,000	신규등록
7	지엠지종합건설(주)	양우석	2016.11.16.	서울160082	강서구 양천로 357, 8층 1호 (가양동, 려산빌딩)	1,200,000	신규등록
8	(주)덕현종합건설	유진숙	2016.11.29.	서울160083	서초구 논현로 79, 1009호 (양재동, 윈드스톤오피스텔)	500,000	신규등록
9	(주)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	서정모 임창수	2016.11.30.	서울160084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역삼동)	2,500,000	신규등록
10	다함하비오(주)	안성수	2016.11.08.	서울110063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2 (가산동)	업무종료	폐 업
11	(주)타워플래닝	최완배	2016.11.18.	서울160062	강남구 언주로30길 21, 4202호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회사사정	폐 업
12	(주)유안이앤씨	김영주	2016.11.23.	서울150077	송파구 올림픽로34길 5-29 (방이동)	신탁사에 사업위탁	폐 업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3	(주)케이비부국제1호개발전 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배진호	2016.11.28.	서울110101	강남구 테헤란로 124, 15층 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내 (역삼동, 풍림빌딩)	파산	폐 업
14	에스씨건설(주)	안명선	2016.11.29.	서울150009	송파구 올림픽로34길 27-23, 4층 (방이동, 에스씨빌딩)	인력부족	폐 업
15	호텔엠피에프브이(주)	서영복	2016.11.30.	서울120020	서초구 사평대로 73, 4층 (반포동)	사업종료	폐 업
16	(주)금강코퍼레이션	임태형	2016.11.30.	서울160055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11층 (여의도동, 동우국제빌딩)	인력부족 및 사업위탁	폐 업
17	(주)거목산업	임거목	2016.08.12.	서울160054	강남구 연주로30길 13, 1716호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300,000	전 출 (충북)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9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소방시설업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등록일)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일
제 서초1999-15호 (1999.4.8.)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티임건설(주) (노광래)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9 3층 (서초동)	2016.11.15.
제 송파2014-6호 (2014.9.11.)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케이엔지니어링 (강경호)	송파구 동남로2길 33 302호(문정동)	2016.11.17.
2016-01-00088 (2007.8.14.)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삼성물산주식회사 (최치훈)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신천동)	2016.11.14.

등록번호 (등록일)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일
제 광진2006-4호 (2006.5.23.)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한국소방 (장성진)	광진구 자양로3길 46-8	2016.11.18.
2016-01-00031 (2016.3.7.)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전기)	주식회사 동호기술단 (윤동수)	강남구 논현로6길 5 302호(개포동)	2016.11.23.
2016-03-00107 (2016.9.28.)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전기,기계)	주식회사 드림엔지니어링 (오진택)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2 (영등포동)	2016.11.23.
2016-03-00138 (2016.9.28.)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주)건창기술단 (김영규)	동대문구 왕산로 81 707호	2016.11.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12.15. ~ 2016.12.29.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주)창성종합건설 (송광수)	건축공사업 04-0799	서울시 금천구 공원로 41, 411호	2016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	영업정지2개 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2016.12.29. (목)16:00 시설안전과 청문실	시설안전과 주무관 김건로	법 제82조 제5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시설안전과)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1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홍엽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3길	일시 : 2016-10-06 11:25 장소 : 서울숲 내용 : 서울06카7480(덤프)차량 축하중 1.6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경성	인천광역시 남구 비룡길29번길	일시 : 2016-10-11 10:51 장소 : 서울숲 내용 : 경기06모6944(덤프)차량 축하중 1.4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1. 31.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2호

환경건설탕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건설탕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 창원이앤이
2. 대 표 자 : 박재형(1956.6.23)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8, 2층(녹번동)
4. 업 종 : 환경건설탕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12호
6. 등 록 일 자 : 2016. 12. 6.
7. 전 화 번 호 : 02-355-582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3호

장충단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0호(2015. 4. 30)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장충단공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장충단근린공원
2.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3. 면 적 : 289,209㎡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계	289,209.00	98,928.08	289,209.00	98,928.08	연면적(증)73.60㎡
기 반 시 설	소 계	37,230.18	27,470.18	37,230.18	27,470.18
	도 로	30,642.30	20,882.30 (9,760.00)	30,642.30	20,882.30 (9,760.0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광 장	6,587.88	6,587.88	6,587.88	6,587.88	
조 경 시 설	5,428.79	5,428.79	5,428.79	5,428.79	
유 희 시 설	201.00	201.00	201.00	201.00	
휴 양 시 설	1,935.21	1,935.21	1,935.21	1,935.21	연면적(감)94.56㎡
교 양 시 설	21,283.14	21,283.14	21,283.14	21,283.14	연면적(증)168.16㎡
운 동 시 설	31,757.94	31,757.94	31,757.94	31,757.94	
편 익 시 설	8,959.54	8,959.54	8,959.54	8,959.54	
관 리 시 설	1,892.28	1,892.28	1,892.28	1,892.28	
녹지 및 기타	180,520.92		180,520.92		
시 설 율 (법정 40%)	$(98,928.08 / 289,209.00) \times 100 = 34.21\%$		$(98,928.08 / 289,209.00) \times 100 = 34.21\%$		
건 폐 율 (법정 10%)	$(18,939.73 / 289,209.00) \times 100 = 6.55\%$		$(19,107.89 / 289,209.00) \times 100 = 6.60\%$		

○. 세부 변경내용

구 분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교 양 시 설 (전시장)	증) 168.16	증) 168.16	
휴 양 시 설 (경로당)	증감 없음	감) 94.56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6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신청자 : (주) 대아이די아이
 - 나.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305(용답동)
2. 점용장소
 - 가.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73(405㎡)
 - 나.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113(297㎡)
3. 점용면적 : 702㎡
4. 점용목적 : 건설 폐기물 임시 적치
5. 점용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7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신청자 : (주) 도성개발
 - 나.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37
2. 점용장소
 - 가.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73(218㎡)
 - 나.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057(72㎡)
 - 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113(453㎡)
3. 점용면적 : 743㎡
4. 점용목적 : 건설 폐기물 임시 적치
5. 점용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8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신청자 : 만강건설(주)
 - 나.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8
 2. 점용장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73(398㎡), 송정동 73-1113(60㎡)
 3. 점용면적 : 458㎡
 4. 점용목적 : 건설 폐기물 임시 적치
 5. 점용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19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점용허가 신청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신청자 : (주)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8 (용답동, 유선빌딩7층)
2. 점용장소
 - 가.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057(198㎡)
 - 나.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1113(550㎡)
3. 점용면적 : 748㎡

4. 점용목적 : 건설 폐기물 임시 적치
5. 점용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6.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7.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전까지 복구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02-2211-25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0호**

2016년도 제22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2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6. 12. 8.(목) 14:00 ~ 17:00
-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다. 심의작품 : 총 4건 15작품 (조각 3점, 회화 12점)
- 라. 심의결과 : 승인 13작품, 부결 2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2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송파구 푸르지오시티	회화	남해-기억1		○	같은 건물 내 유사작품의 설치로 중복성이 있으며, 작품의 가로·세로 형태의 정형화로 공간과 어울리지 않음.
1-2		회화	Within Being-Draw	○		
1-3		회화	회화적풍경-Tree II	○		
1-4		회화	너는 무엇을 담고 싶니?	○		
1-5		회화	산사가는길	○		
1-6		회화	남해별곡-기억	○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7	송파구 푸르지오시티	회화	생성과소멸16052	○		
1-8		회화	stone-story	○		
1-9		회화	Flow 2016	○		
1-10		회화	Festival		○	좁은 공간에 강렬한 이미지로 인해 시각적으로 주변과의 조화가 좋지 못하며, 예술성이 미흡함
1-11		회화	Mountain light	○		
1-12		회화	회화적풍경-sea II	○		
2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조각	행복하여라	○		
3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각	행복한 가족	○		
4	광진구 w서울세라톤워커히호텔	조각	Maze-원-자연, 0121-1110=10406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7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36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0거2547	송평숙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3 5길16-1(신정동)	2016-09-17 14:33:48	강변북로일산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75가4550	이기철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 로14길11-8,201호 (오금동)	2016-09-30 08:22:30	올림픽대로공항방 향4차로	"	"
3	75보8275	진주옥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 로48길12-34(시흥동)	2016-09-22 20:45:28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	"
4	80거3198	송윤재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 55길5(수유동)	2016-09-20 10:32:43	올림픽대로공항방 향3차로	"	"
5	80고3923	조상범	서울특별시금천구문성로5 7(독산동)	2016-08-15 13:24:32	서부간선도로성산 방향1차로	"	"
6	80고5881	이형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 로39가길57,106동405호 (홍제동,홍제현대아파트)	2016-09-30 15:33:04	올림픽대로잠실방 향3차로	"	"
7	80고7888	신우정보 전력(주)	서울특별시구로구중앙로8 3,우성빌딩2층(고척동)	2016-09-25 14:46:12	서부간선도로안양 방향3차로	"	"
8	80나1520	(주)태성 기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 로139길4-0(문래동2가)	2016-09-29 10:19:19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	"
9	80로5874	강삼식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천 로58길75-45,116동1602 호(이문동,쌍용아파트)	2016-09-30 17:22:02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10	80버2245	김윤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 앙북로102-14(목동)	2016-09-29 06:44:36	올림픽대로잠실방 향4차로	"	"
11	80보3116	이창우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 가길13-10,302호 (역촌동,성림맨션)	2016-08-04 11:17:56	서부간선도로안양 방향2차로	"	"
12	80서2305	김세현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 분로28길35-16,201호 (삼전동)	2016-09-30 16:11:51	올림픽대로잠실방 향1차로	"	"
13	80저3776	김금정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4 길23-1,B01호(응암동)	2016-09-28 16:14:35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4	80조3780	고인석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 로32길39-5지층(장위동)	2016-09-05 13:59:46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15	82구1602	홍근식	서울특별시성동구송정2 라길11(송정동)	2016-09-23 09:58:08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	"
16	83무4281	김중기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 로40길66,505호(방화동, 방화동태승훼미리아파트)	2016-09-30 09:23:46	올림픽대로잠실방 향4차로	"	"
17	87버5780	홍봉기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1 길56-3,202호(상월곡동, 우성빌라)	2016-09-06 15:24:39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	"
18	89버2149	김용호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5 1길4-5(중곡동)	2016-09-16 16:00:25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19	90두5596	LIUZHIT AO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 1길41,(정릉동)	2016-09-26 16:54:40	서부간선도로성산 방향2차로	"	"
20	90러5445	김종숙	서울특별시강서구공향대 로579-3(염창동)	2016-09-30 15:25:04	올림픽대로공항방 향3차로	"	"
21	91저3062	윤난영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2 5길31,201호(천호동)	2016-09-30 17:49:25	올림픽대로잠실방 향2차로	"	"
22	91저4889	정병균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3 7길11(신정동)	2016-09-21 07:57:29	올림픽대로잠실방 향2차로	"	"
23	92보1215	홍미숙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4 7길94,102동505호 (마곡동,마곡금호어울림 아파트)	2016-09-29 22:39:49	서부간선도로성산 방향1차로	"	"
24	93나4547	(주)주태 건설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4 47번지9호	2016-09-23 05:58:20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25	95수4753	신운식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산9 가길57-2,B01호 (금호동2가)	2016-09-27 19:38:24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	"
26	서울82 도5696	장정세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1 4길16,6동404호 (이촌동,시범아파트)	2016-09-30 11:27:53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	"
27	서울82 로7733	이춘화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 곽1길29-6,102호 (창신동)	2016-08-01 08:14:30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28	서울83 고9284	김장화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6 9길65,103동901호 (염창동,강변성원아파트)	2016-09-26 12:27:22	올림픽대로공항방 향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9	서울83 머1515	(주)대영 광연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1 25(흑석동)	2016-09-19 10:05:59	올림픽대로잠실방 향1차로	"	"
30	서울83 사3265	박종민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 기로19길18(노량진동)	2016-09-28 13:25:49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31	서울85 구4864	주-에이 타임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 1길90(방배동)	2016-09-27 09:46:12	올림픽대로잠실방 향1차로	"	"
32	서울85 구5592	(주)신성 크린텍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 로54길13(당산동6가)	2016-09-21 10:10:42	올림픽대로잠실방 향1차로	"	"
33	서울85 더9502	김창영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3 8길13,101동1202호(개봉 동,신개봉삼환아파트)	2016-09-14 01:23:00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	"
34	서울85 도2470	신성민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 로6가길19,B좌동(녹번동)	2016-08-30 09:51:31	올림픽대로잠실방 향3차로	"	"
35	서울85 자2268	서영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응암 로33,102동904호(북가좌 동,북가좌현대아파트)	2016-09-23 12:31:24	올림픽대로잠실방 향4차로	"	"
36	서울86 나2776	권순관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4 3길3-12,301호 (중곡동,그린하우스)	2016-09-21 17:28:02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4. 공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6.12.30(금)

나. 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이동선(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6-10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복지재단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조선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 (소계)								
본인	임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 33-1번지 149,950.00㎡	223,070	1,926	0	224,996		
본인	임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 33-2번지 14,876.00㎡	41,086	1,499	0	42,585	가액변동	
본인	임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 33-2번지 14,876.00㎡	4,209	149	0	4,358	가액변동	
본인	임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34번지 27,769.00㎡	7,775	278	0	8,053	가액변동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0번지 113.20㎡ 중 53.70㎡	170,000	0	0	170,000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510번지 4.00㎡	0	0	0	0		
▶ 건물 (소계)								
			325,547	431,798	31,649	725,696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건물 127.02㎡	3,898	399,102	0	403,000	증전신고시 오기정정 및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대지 0.00㎡ 건물 0.00㎡ (대지 123.00㎡ 감소, 건물 14.00㎡ 감소)	31,649	0	31,649	0	종전신고시 공동소유미표 기로 수정을 위한 상실신고	
본인	단독주택	[건물]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0 외 4필지 제 134호 대지 113.20㎡ 중 42.60㎡ 건물 39.67㎡	130,000	0	0	130,000		
본인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0 외 4필지 건축물 제 133호 대지 18.00㎡ 중 16.10㎡ 건물 39.67㎡	160,000	0	0	160,000		
본인	단독주택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대지 708.00㎡ 중 123.00㎡ 건물 82.57㎡ 중 14.36㎡ (대지 지분면적 123.00㎡ 증가, 건물 지분면적 14.36㎡ 증가)	0	32,696	0	32,696	종전신고시 공동소유미표 기로 수정을 위한 상실신고 후 재입력,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소울배기량(1,600cc)	8,460	0	0	8,460		
▶ 예금 (소계)								
본인		우리은행 1,130(800 증가), 국민은행 168(168 증가)	330	968	0	1,298	정기예금 및 신규 채무발생 등	
배우자		신한은행 14,400, 우체국 33,120, NH투자증권 1, 우리은행 4,491(43,098 감소), 한국투자증권 37	95,147	160	43,258	52,049		
장녀		국민은행 100, (주)KEB하나은행 71(434 감소), 씨티은행 2,033(2,033 증가), 신길6동 118, 우리은행 1,760(160 증가)	2,323	2,193	434	4,082		
차녀		국민은행 2,035(1,625 증가), 중소기업은행 10, 우리은행 1,760(160 증가)	2,020	1,785	0	3,805		
▶ 증권 (소계)								
배우자	상장주식	휴온스 0주	0	0	0	0	0 해약	
▶ 채무 (소계)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198,897(34,902 감소)	283,799	59,656	94,558	248,897	신규채무발생	
본인	건물임대채무	[건물]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0 외 4필지 제 134호 임대보증금	233,799	59,656	94,558	198,897		
			25,000	0	0	25,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0 외 4필지 건축물 제 133호 임대보증금	25,000	0	0	25,000		
총계			373,098	379,174	-19,217	771,489	증감액 : 398,391천원 (가액변동: 401,028천원)	

구 고 시

◆ 성북구고시 제2016-1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성북구고시 제2015-69호(2015.4.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성북구 성북동 226-259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사업의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259번지 일대
- 사 업 면 적 : 101,059㎡ 중 68,454㎡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15. 4. 30. ~ 2016. 12. 31.
- **변 경 : 2015. 4. 30. ~ 2017.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변경없음) : 별첨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성북	산25-52	임야	23,601	23,601		국(산림청)				
2	성북	산25-1	임야	656,073	12,153		국(산림청)				
3	성북	산25-22	임야	15,168	15,168		국(문화재청)				
4	성북	226-39	대	299	299		서울시				
5	성북	226-40	대	264	264		국(재무부)				
6	성북	226-41	대	489	489		국(재무부)				
7	성북	226-42	대	291	291		국(재무부)				
8	성북	226-43	대	314	314		국(재무부)				
9	성북	226-49	대	1,051	1,051		서울시				
10	성북	226-50	대	783	783		국(재무부)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1	성북	226-51	대	635	635		국(재무부)				
12	성북	226-52	대	469	469		국(재무부)				
13	성북	226-53	대	142	142		국(재무부)				
14	성북	226-54	대	83	83		국(재무부)				
15	성북	226-55	대	122	122		국(재무부)				
16	성북	226-56	대	238	238		국(재무부)				
17	성북	226-57	임	2,281	2,28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2-23	원봉로				
18	성북	226-58	대	2,138	2,138		서울시				
19	성북	226-59	대	477	477		국(재무부)				
20	성북	226-60	대	94	94		국(재무부)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21	성북	226-61	대	245	24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61	김세환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2	성북	226-64	대	235	235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09, 102-1004호 (역삼2동, 레미안펜타빌)	강선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마두동, 삼성@), 108-301호	강건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2(마두동, 벽신@), 606-703호	강상모				
23	성북	226-66	대	418	418		국(재무부)				
24	성북	226-67	대	206	206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3,301호	김인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25	성북	226-92	대	231	23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92	고연신				
26	성북	226-246	대	20	20		국(재무부)				
27	성북	226-247	도로	296	296		국(건설교통부)				
28	성북	226-250	도로	788	788		성북구				
29	성북	226-253	도로	133	133		국(건설교통부)				
30	성북	226-254	도로	143	143		국(재무부)				
31	성북	226-256	대	2	2		성북구				
32	성북	226-258	도로	533	533		성북구				
33	성북	226-259	임	2,273	2,273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34	성북	226-261	임	248	248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35	성북	226-264	임	160	160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36	성북	226-270	대	42	42		성북구				
37	성북	226-273	대	10	10		국(재무부)				
38	성북	226-274	대	31	31		국(재무부)				
39	성북	226-275	대	15	15		성북구				
40	성북	226-276	대	26	26		성북구				
41	성북	226-277	도로	2	2		성북구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42	성북	226-278	임	10	10		성북구				
43	성북	226-279	임	6	6		성북구				
44	성북	226-281	대	64	64		서울시				
45	성북	226-282	임	96	96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파트빌리지)	박경미				
46	성북	226-283	임	45	45	“	박경미				
47	성북	226-284	임	37	37	“	박경미				
48	성북	226-285	대	346	346		국(재무부)				
49	성북	226-286	임	27	27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파트빌리지)	박경미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주소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50	성북	226-287	임	6	6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51	성북	226-288	임	4	4	"		박경미				
52	성북	226-289	대	34	3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3, 301호		김인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53	성북	226-290	대	47	47			국(재무부)				
54	성북	226-291	대	57	5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09, 102-1004호 (역삼2동, 래미안펜타빌)		강선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마두동, 삼성@), 108-301호		강건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2(마두동, 벽산@), 606-703호		강상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55	성북	226-292	임	14	14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56	성북	226-293	대	30	30		성복구				
57	성북	226-295	임	482	482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별첨 2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자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226-64 226-198 226-63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76.0334	208	주거 및 영업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64	한경일				기존무허가 임부신발생
					18	천막구조물 (주차장)						
					5	화장실						
					105	천막구조물 (영업장)						
					8	창고						
					10	창고						
					26	주거						

별첨 2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2	성북동 226-61 226-59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186	주거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61	김세환				신바생
					26	창고						
					9	원두막						
					26	창고						
					18	원두막						
3	성북동 226-67	건물 (주택)	조립식 등		94	주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3, 301호	김인자				신바생

◆ 양천구고시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2006-제133호(2006.4.20.)로 결정고시 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목동 907-3호 공공청사에 대하여 용도 및 면적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도로 37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2) 명 칭 : 공공업무시설 용도변경 및 면적변경

다. 사업시행면적 : 590.79㎡(전체 760.1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양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0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사. 건축계획

- 1) 용도변경 및 면적변경 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용 도	면 적	용 도	
1층	310.66㎡	동사무소	295.41㎡	공공업무시설	
			15.25㎡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층	282.34㎡	동사무소	282.34㎡	공공업무시설	
3층	204.48㎡	동사무소	252.48㎡	공공업무시설	
지하	192.55㎡	동사무소	192.55㎡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990.03㎡		1,038.03㎡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084-5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지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토지	대	760.10	590.79	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 구청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해당 없음		

구분	구조	수량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지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권리자	
건축물	RC조	1동	1038.03	공공업무 시설 등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 구청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해당 없음		

◆ 강서구고시 제2016-11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02.1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위 치	지목	면적(㎡)	내 용	
			기정	변경
공항동 45-14	대지	152	단독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공항동 45-15	대지	106	단독개발	
공항동 45-71	대지	56	단독개발	

2. 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 변경)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3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금천구고시 제2016-86호

군부대 특별계획구역(D2-1)구역 공사완료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83(2016.11.30.)호로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D2-1)구역 공사 완료 고시하였으나,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1. ~ 4항 : 변경없음

5. 사용승인 내용

가. ~ 다. : 변경 없음

다. 건축면적 : 11,759.82㎡ (건폐율 : 18.29%)

라. 규 모

- 정정 전 : 지하2층/ 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1,7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장기전세주택 181세대).
- 정정 후 : 지하2층/ 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1,7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장기전세주택 183세대).

◆ 금천구고시 제2016-87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62(1979. 8. 10)호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 허가 번호 제170(1980. 5.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원부변경 허가를 득하고, 금천구 고시 제2016-78호(2016.10.30.)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여객자동차정류장』 관련 하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1161호(2016.11.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시흥동 271-51번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 명칭 : 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후 정류장 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2,60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시행	금회시행	차후시행		
결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실시 계획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2016.10.30	· 옹벽(71m) 철거 · 건물철거(1동) · 주차장 및 정류장 확대
변경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면적 변경없음 · 인접부지 절토로 인한 옹벽높이 변경으로 공작물 전체 면적의 17.5%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 성명 :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박도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 : 2년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 아. 사업목적
- 당초 설계 시 인접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인접건축물
의 신축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옹벽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인가를 득하였으나, 인접부지 절토로 인해 옹벽높이 변경으로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계 획 서(변경)

1.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 명 칭 : 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2,607m²
3. 사업자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 성 명 :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박도식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 : 2년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서류(별첨)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
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기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는 제외 합니다.)(해당없음)
7.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
청이 아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해당없음)

8. 사 업 비

- 사업비 : 일억오천구백삼십일만원정(₩159,310,000)

9. 사 업 목 적

- 당초설계시 인접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인접 건축물의 신축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옹벽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허가를 득하였으나 인접부지 절토로 인해 옹벽높이 변경으로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함

10. 사업의 개요

① 토 공

- 절 토 : 869m³
- 성 토 : 37m³
- 옹벽철거 : 71m
- 건물철거 : 1동(지하1층, 지상3층)

② 배 수 공

- 배수로(300 X 300) : 45.9m

③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20cm) : 528m²
- 아스팔트포장(T=15cm) : 195m²

④ 구조물공

- 옹벽설치 : 50.08m

2.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추진경위 및 변경사유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62(79. 8. 10)호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2. 서울특별시 허가 번호 제170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원부변경허가득(80. 5. 19)
3. 당초설계시 인접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인접 건축물의 철거 및 정류장의 협소로 인해 옹벽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함
4. 교통행정과-50434(2016. 10. 31)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음
5. 인접부지의 절토로 인한 옹벽높이의 변경으로 공작물 전체 연면적의 17.5%(변경 전:293.55m², 변경후:249.76m²)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함

3. 시 행 조 서(변경없음)

■ 결 정 조 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시행	금회시행	차후시행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건축물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율(%)	층 수	비 고
기정	17.75%	40%	최고3층 이하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4.41%	5.03%	최고2층 이하	지상2층

4. 건축물 계획 조서(변경없음)

동 별	층 별	명 칭	사용명칭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시흥CNG충전소 관리동	지하1층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111.40	멸실	
	1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281.89	멸실	
	1층	자동차 관련시설	주방	46.46	멸실	
	2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281.89	멸실	
	3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301.40	멸실	
	계			1,023.04	0.00	
시흥CNG충전소 사무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 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2층	위험물처리및저장 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계			32.70	32.70	
시흥CNG충전소 압축시설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 시설	CNG저장소	77.55	77.55	
시흥CNG충전소 충전동	1층	위험물처리및저장 시설	충전기	21.00	21.00	
합 계				2,111.48	131.25	
건축면적				462.76	114.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042.89	131.25	
건 폐 율			$114.90 \div 2,607 \times 100$	17.75%	4.41%	
용 적 률			$131.25 \div 2,607 \times 100$	40.00%	5.03%	

5. 토 지 이 용 계 획 조 서(변경없음)

구 분	규 격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금회변경	기 정	금회변경	
건 축 부 지	여객자동차정류장	462.76	114.90	17.75%	4.41%	347.86(감)
정류장 부지	콘크리트 포장 (T=20CM)	1,719.24	1,907.1	65.95%	73.15%	187.86(증)
주차장 부지	아스팔트	72	492	2.76%	18.87%	기정주차수:6면 변경주차수:15면
통행로 부지		131	93	5.02%	3.57%	38.00(감)
기타부지(경사면)		222	-	8.52%	0.00%	222.00(감)
계		2,607	2,607	100.0	100.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변경없음)

작성자 : 하나축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m²)

일련 번호	소재 지동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시흥동	271-51	대	2,607	2,607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계				2,607	2,607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변경없음)

작성자 : 하나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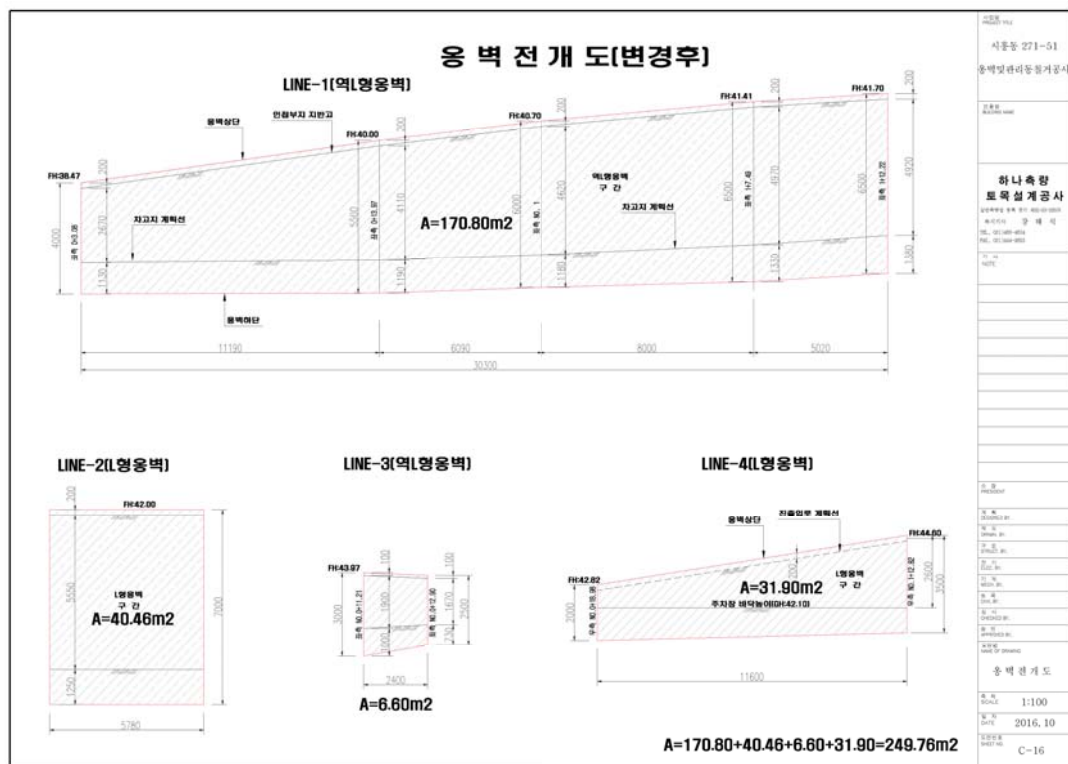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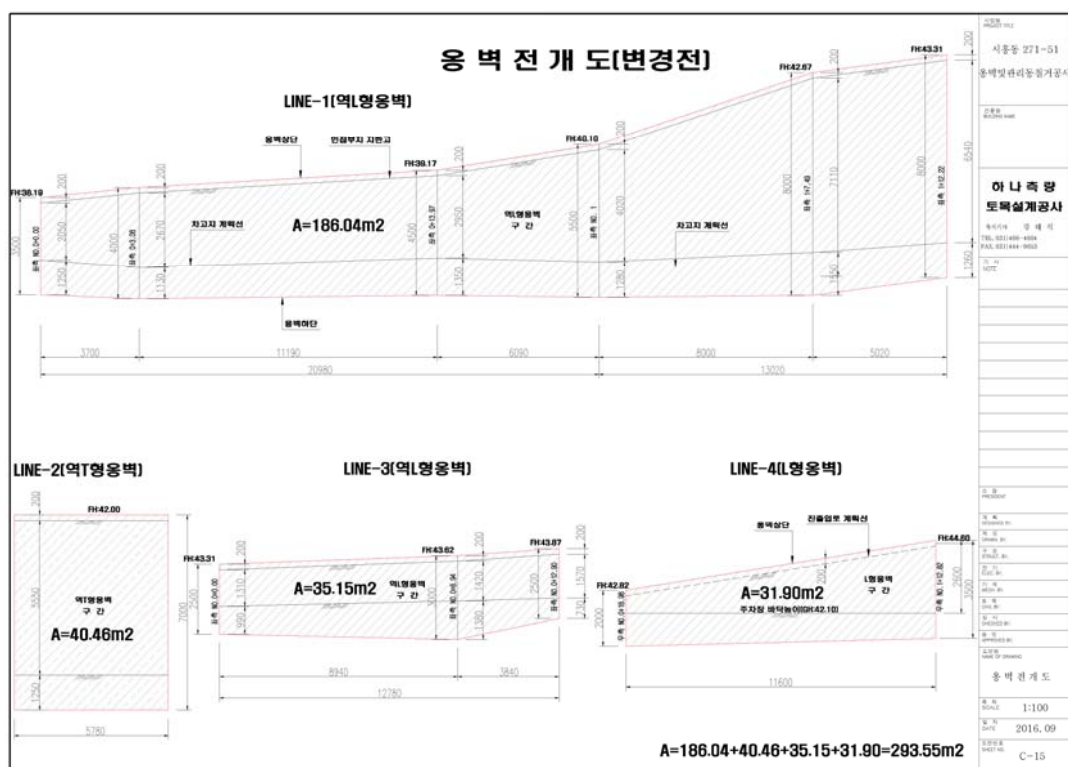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m²)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1	금천구	시흥동	271-51	관리동	철근콘크리트	1,023.04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사무동	철근콘크리트	32.70						
				압축시설동	철근콘크리트	77.55						
				충전동	일반철골구조	21.00						

8. 재 원 조 달 방 안(변경)

공 종 별	총사업비		재원별	비 고
	물량	금액		
계		159,310,000		전액 자체부담
부지매입비	2,607㎡			범일운수 회사 소유
시설비	2,607㎡	159,310,000	회사 시설비	포장,옹벽,헨스



◆ 관악구고시 제2016-107호

도시관리계획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0호(2009.09.03.)로 결정된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 변경(단독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110-79호 외 1필지의 획지계획 변경(단독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면적(㎡)	획지계획	지번	면적(㎡)	획지계획	
미림 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림동 110-79호	132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110-79호	132	단독개발	
	신림동 110-84대	142		신림동 110-84대	142	단독개발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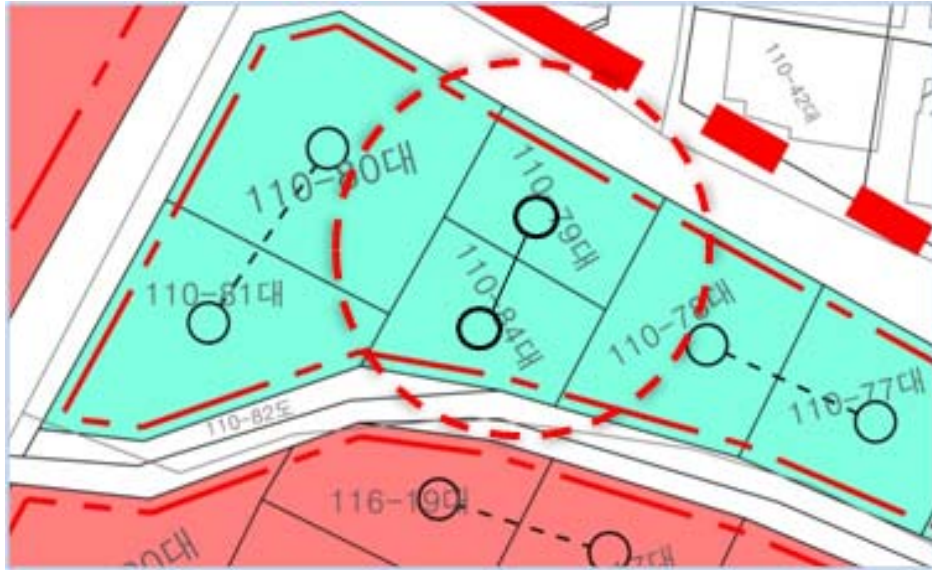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110-79, -84호]

기 정



변 경



◆ 강동구고시 제2016-1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47호(2013. 5.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1329호(2016. 11. 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된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105~105-3간
 - 금회(2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둔촌동 102-3, 강동구 둔촌동 105, 강동구 둔촌동 107-1, 강동구 둔촌동 108-3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의 명칭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125m
 - 금회(2차) 사업구간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103m
5.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6.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			인	비고
		공부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둔촌동 102-3	332	39	도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2	둔촌동 105	1121	200	대	2/29	최중*	하남시 덕풍동 4**2 **아트빌라 1**					
					2/29	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2** 주공아파트 2**~2**					
					2/29	최화*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군위실길 5*-2*					
					4/29	최홍*	서울 강동구 삼전동 4-*					
					4/29	최강*	서울 강동구 둔촌동 4*-1					
					4/29	최홍*	서울 강동구 길동 2** 로즈** 가-1**호					
					10/29	최도*	서울 강동구 둔촌동 1**					
					1/29	최영*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					
3	둔촌동 107-1	380	105	대		조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03	강동** 강동** 조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 (임사동) (**지점)	근저당권		
4	둔촌동 108-3	255	88	대		조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	강동** 강동** 조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 (임사동) (**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 사업명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둔촌동 105	건물	주택	세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40	6/29	최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1**				
						4/29	최흥*	서울 강동구 삼전동 4-*				
						4/29	최강*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				
						4/29	최흥*	서울 강동구 길동 2** 로즈**가-1**호				
						10/29	최도*	서울 강동구 풍성로73길 **				
2	둔촌동 107-1	지장물	차고		13	1/29	최영*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호				
							최도*	서울 강동구 풍성로73길 **				
		건물	주택	시멘트벽돌조 세멘기와지붕	13		조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	강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암사동) (**지점)	근저당권	
		건물	주택	시멘트벽돌조 세멘기와지붕	13							
		지장물	창고	-	9							
3	둔촌동 108-3	지장물	창고	-	1							
		지장물	창고	-	2		조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				
		지장물	창고	-								

◆ 강동구고시 제2016-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4호(2006. 7.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6-47호(2006. 8.17.)로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공고 제2016-985호(2016. 8.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강동구고시 제2016-127호(2016. 9. 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동구공고 제2016-173호(2016.1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저촉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강동구 천호동 217-18~명일동 320-2(천일초교~명일역간)
 - ▶ 금회(4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421-142, 강동구 암사동 425-10, 강동구 암사동 425-179, 강동구 암사동 425-187, 강동구 암사동 425-186, 강동구 암사동 425-197, 강동구 암사동 425-164, 강동구 암사동 425-188.
- 변 경 : 강동구 천호동 217-18~명일동 320-2(천일초교~명일역간)
 - ▶ 금회(4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421-142, 강동구 암사동 422-29, 강동구 암사동 425-200, 강동구 암사동 425-201, 강동구 암사동 425-202, 강동구 암사동 425-188, 강동구 암사동 476-20.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라. 사업의 규모 :

- 당초 : 도로확장 폭 12~15m → 15~22m, 연장 1,340m
 - ▶ 금회(4차) 사업구간 : 강동구 암사동 421-142~암사동 425-164(305m²)
- 변경 : 금회(4차) 사업구간 : 강동구 암사동 421-142~암사동 476-20(304m²)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변경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당초	암사동 421-142	37	37	도		이*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 **아파트 *08-*07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로*가 *~1 (**지점)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암사동 422-10	314	3	대		*성* 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호동 *80-6 *층				
						41.568 /314	오*주	서울 강동구 구**로 3*3, *01호	**은행	서울 중구 남**로84(을지로2가) (**지점)	근저당권	
						42.012 /314	경*래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55길40			근저당권	
						41.568 /314	이*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0 **빌 *01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2.012 /314	김*환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0 **빌 *02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1.568 /314	박*홍	서울 강동구 구**로*7길 **~33, *02호	**은행	서울 중구 소*로*1 (회*동1가) (**동지점)	근저당권	422-10 에서 분할
						41.706 /314	권*희	서울 강동구 천*로 1*5-5, *층동(길동)				
						32.388 /314	윤*온	서울 강동구 명*로1*9-4, *01호(길동)	삼성** **보험	서울 *구*로*9 (을지로*가)	근저당권	
						31.178 /314	김*경	전리남도 목*시 용*동 1**2-17				
	변경	암사동 422-29	3	3	대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성명	관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3	당초	암사동 425-179	1,828	2	대		유*학	서울 송파구 신*동 *88 롯데*슬*드 *02-3*0*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가 *03 (**지점)	소유권이 외의권리	
	변경	금회(4차) 사업시행지에서 제외										
4	당초	암사동 425-187	317	22	주유소		유*학	서울 송파구 신*동 *88 롯데*슬*드 *02-3*0*				
	변경	금회(4차) 사업시행지에서 제외										
5	당초	암사동 425-186	335	1	대		최*영	서울 강동구 구**로 3*5 (암사동)				
	변경	암사동 425-202	1	1	대		최*영	서울 강동구 구**로 3*5 (암사동)				422-202 에서 분할
6	당초	암사동 425-197	329	1	대	2/3	최*호	서울 성동구 **심리동 992 *학**아파트 *02-1**5				
						1/3	최*복	서울 강동구 **동 2*5 **마을**아파트 *02-2**3				
	변경	암사동 425-201	1	1	대	2/3	최*호	서울 성동구 **심리동 992 *학**아파트 *02-1**5				425-197 에서 분할
						1/3	최*복	서울 강동구 **동 2*5 **마을**아파트 *02-2**3				
7	당초	암사동 425-164	25	13	대		조*철	서울 강동구 암*동 산*3				
	변경	암사동 425-200	13	13	대		조*철	서울 강동구 암*동 산*3				425-164 에서 분할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8	당초	암사동 425-188	226	226	도		강**로별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압**로 *01 **아파트 *1동 *08호 (압구정동)				
	변경 변경없음											
9	추가	암사동 476-20	398.7	22.2	대		조*철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49 (암사동)	서울우유 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암사역지점)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 사업명 : 구천면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관리	
1	임사동 422-10	담장	콘크리트 담장	0.88	m ²	41.568 /314	오*주	서울 강동구 구**로 3*3, *01호	**은행	서울 중구 남**로84(을지로2가) (***지점)	근저당권	
						42.012 /314	경*례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55길40			근저당권	
						41.568 /314	이*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3 **아파트 *8-*02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2.012 /314	김*환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0 **빌 *02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1.568 /314	박*홍	서울 강동구 구**로*7길 **-*33, *02호	**은행	서울 중구 소*로*1 (회*동1가) (**동지점)	근저당권	
						41.706 /314	권*희	서울 강동구 천*로 1*5-5, *층동(길동)				
						32.388 /314	윤*온	서울 강동구 명*로1*9-4, *1호(길동)	삼성** **보험	서울 *구을*로*9 (을지로*가)	근저당권	
2	임사동 422-10	안 내 표지판	철재	3.5	m	31.178 /314	김*경	전라남도 목*시 용*동 1**2-17				
							정*복	서울 강동구 암*동 4**-*3				

구 공 고

◆ 노원구공고 제2016-964호

도시계획시설(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 실시계획(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6-84호(2016. 9.2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중계동 37-3 필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평생학습과에 비치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7-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다. 면 적 : 203㎡

라. 사업의 내용 : 물건보상, 공공공지 조성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1-1)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서울시보,노원구보)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평생학습과 (☎02-2116-3993)

차.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중계동 37-3	하천	315	203	영민	노원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화로 437	윤만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중계동 37-3	상가	세멘조	1동 (31㎡)	영업	윤만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2	노원구 중계동 37-3	상가	슬래트/ 샌드위치패널	1동 (54㎡)	영업	윤만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정연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9	세입자 (영업)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 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와내용	
3	노원구 상계동 996-10	세차장 철구조물	철제	3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콘크리트바닥		1식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이동화장실		1동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세차장기계실		1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정화물탱크		1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정화조		1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사무실건물	컨테이너	1동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사무집기		1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자재창고		1동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임간판		1식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에어컨		1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cctv		2개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세탁기		2대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에어컨푸레서		1대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진공청소기		2대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메트청소기		2대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수도시설		1식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전광판		2식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에어컨		2개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cctv		2개	영업	윤민익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 노원구공고 제2016-9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7-3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인가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6. 1. ~ 2018. 6. 30.(30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7-3	○면적 : 203㎡ ○내용 : 공공공지	노원구청장(김성환)/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노원구청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팀	2016.12. . ~ 2016.12. (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평생학습과(☎02-2116-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계동 37-3

□ 대상지 위치도



□ 현황사진



◆ 서대문구공고 제2016-10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1983.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1동 315-30~167-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142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 330-1762)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홍제동	315-21	대	195	40	이명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15 (홍제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주재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7-7 삼보빌라 401호					
						주유나	서울 은평구 통일로59길8-6, 306호 (북번동)					
2	홍제동	315-53	대	56	56	곽춘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59 세종리젠시빌101-404					
3	홍제동	315-31	대	462	33	배사용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5-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무악재지점)	근저당권		
4	홍제동	167-20	대	53	6	서대문구						
5	홍제동	167-56	대	22	22	강인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33					
6	홍제동	313-56	도로	19	19	박성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아파트 112-1208	주식회사 창조이엔씨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4-5 아이케이투빌딩	가등기	압류	
								마포세무서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7	홍제동	313-49	대	117	11	김아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1길54, 2동104호(공덕동, 현대아파트)				
8	홍제동	313-35	대	195	22	이석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5				
9	홍제동	313-31	대	106	1	서대문구					
10	홍제동	167-11	대	129	32	주식회사 진보어페럴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26(홍제동)				
11	홍제동	167-10	대	238	43	김향남	일본국 동경도 강호친구 서강 2-26-10-305				
12	홍제동	167-12	대	202	50	서울특별시					
13	홍제동	313-37	대	317	309	서울특별시					
14	홍제동	167-3	대	50	30	서대문구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 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5	홍제동	313-30	대	317	4	박정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0				
						권영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0				
						송영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1, 303호(홍제동, 세원연립)				
						이승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46				
						서정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0 103호				
						최종태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3-426				
						임점례	서울 은평구 통일로50길 12(녹번동)				
						정현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1, 203호(홍제동, 세원빌라)				
						이동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7길15, 202호 (남기좌동)				
						정국동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23길 33 (홍제동)				
						박옥연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4길 23 (홍제동)				
						엄운섭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레로 2, 402동 502호(디엠씨파크뷰자이)	중앙서부 새마을금고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5길 4 (면목동)	근저당권	
						이 하 여 백					

물 건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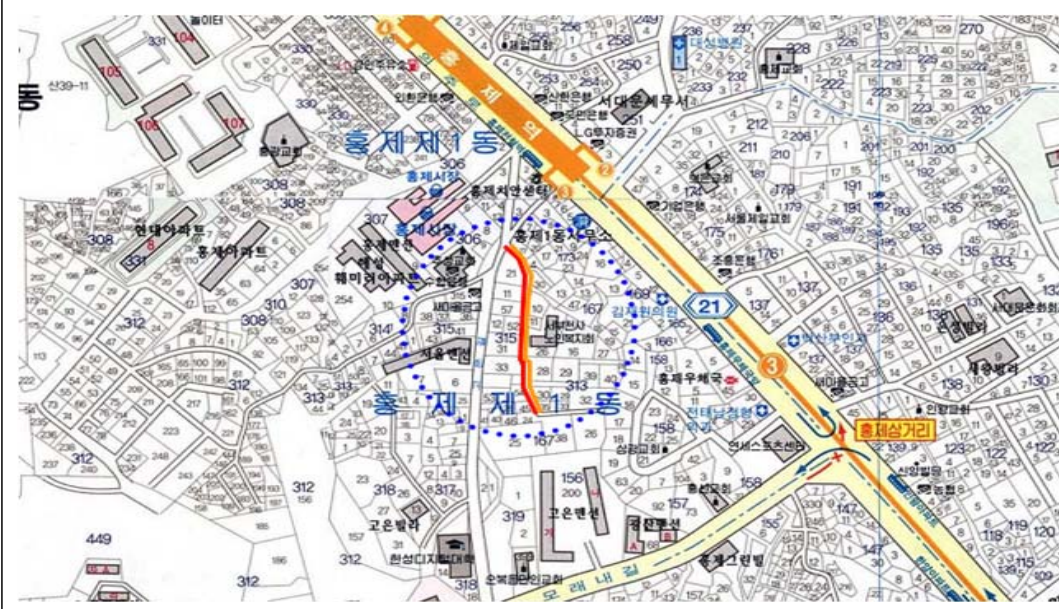
○ 사업명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홍제동	315-21	가건물		7	이명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15 (홍제동)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홍제동지점)	근저당권	
			대문	철제	1식						
			담당	벽돌	1식	주재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7-7 삼보빌라 401호				
			계단	철제	1식						
			주차장	슬라브	1식	주유나	서울 은평구 통일로59길 8-6,306호 (녹번동)				
			수목		1식						
2	홍제동	167-57	대문	철제	1식	김용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5 아남 라동 201호				
			담장	벽돌	1식	박용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7-21				
			베란다1층		1	김종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57				
			베란다2층		1						
3	홍제동	167-54				조혜숙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1-16 202호				근저당권
						김현숙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4 다동 102호(홍제동, 아남빌라)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홍제동지점)		
						정남중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7-54 아남빌라 다동 201호				
						구은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69-15 경일세르빌 402				
			담장	벽돌	1식	김신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5-8 우림레스빌 1층-104				
						박청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가길 24, 302호(홍제동, 아남빌라)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면적 (㎡)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등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4	홍제동	313-35	담장	벽돌	1식	이석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35				
5	홍제동	167-11	대문	철제	1식	주식회사 진보어패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1-27				
			담장	석축,벽돌	1식						
			건물1층		26						
			대문	철제	1식						
6	홍제동	167-10	수도	계량기	1식	김향남	일본국 동경도 강호친구 서강 2-26-10-305				
			도시가스		1식						
			담장	벽돌	1식						
			건물1층		2						
			건물2층		2						
			계단	철계단	8						
			계단	화강석	1식						
			수목		1식						
							이 하 여 백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대상지 현황사진



◆ 양천구공고 제2016-130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천구공고 제314호(2014. 3.20.)로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양 천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 : 백만원)

시설별	시 행 기 간 별								
	계			1단계(1~3년차)			2단계(4년차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5	8,434.3	52,439	1	1,865.7	20,239	4	6,568.6	32,200
공공청사	1	1,865.7	20,239	1	1,865.7	20,239			
도로	1	1,792.0	4,000				1	1,792.0	4,000
주차장	2	3,355.4	13,200				2	3,355.4	13,200
사회복지 시설	1	1,421.2	15,000				1	1,421.2	15,000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명	위 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공기 업	
								계	시비	구비		
공공청사	신정동 1319-4,5	2016 ~ 2019			1,865.7	20,239	5,000	15,239	5,000	10,239		1단계
도로	신정동 1157-1 ~ 산44-10	2019 ~ 2020	8	224	1,792.0	4,000		4,000		4,000		2단계
주차장	신정동 319-21,22	2019 ~ 2020			1,513.1	8,200		8,200		8,200		2단계
주차장	신정동 1322-3	2020 ~ 2022			1,842.3	5,000		5,000		5,000		2단계
사회복지 시설	신정동 1286-2	2020 ~ 2022			1,421.2	15,000		15,000	3,000	12,000		2단계

3. 관계도면 : 생략

4.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21), 도로과(☎2620-3631), 교통지도과(☎2620-3736), 교육지원과(☎2620-31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금천구공고 제2016-1177호

(가칭) 금천구 발달장애인 복지센터(건물) 기부채납 희망자 모집 공고

금천구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복지시설(건물) 기부채납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1. 설치개요

가. 건립시설 : (가칭) 금천구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나.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2외 6필지

다. 사 업 량 : 1개소(2,400㎡)

라. 추정공사비 : 6,812백만원(2,500백만원-구비지원)

마. 기 타

- 제출된 기본 도면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금천구청과 반드시 협의
- 건립부지 615㎡는 금천구에서 제공
- 향후 건축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건축규모 확대 가능

2. 신청자격(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시킨 자

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건물신축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신축 후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자

나. 발달장애인사업에 뜻이 있는 자로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주민등록)가 있는 자

3. 신청제외

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최근 3년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법인

나. 사업자 기본재산에 재산권행사 하자(근저당 등 부채설정)가 있을 경우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접수기간 : 2016.12.28 ~ 2017.01.09 (10일간)

다. 접 수 처 :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 02-2627-1922)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09:00~18:00)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마. 신청서류

- 건물 건립 기부채납 희망자 모집 신청서 1부
- 법인일반현황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이사회 회의록(기부채납결의) 각 1부
- 신청자 재산현황(예금잔액증명 및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및 투자확약서 각 1부
- 자금조달계획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건물 설계도서안(기본설계 또는 평면도) 1부

5. 선정방법 및 발표

- 가. 기부채납 대상자 선정 :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선정
- 나.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재원조달계획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
- 다. 선정결과는 개별 서면 통보
- 라. 추후 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기부 채납자가 시행

6.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나.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다. 건물 기부채납 민간사업자 선정 제출서류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사회복지과(담당 : 이필주 ☎02-2627-1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공고 제2016-205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1호(1995.2.1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30호(1997.4.30.) 및 강남구 고시 제2000-328호(2000.11.25.), 강남구 고시 제2016-135호(2016.10.6.)로 변경 결정된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개포동 일대 분당선 선릉역 외 2개역사 승강설비설치 공사를 위해,
2.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개포동 일대
(선릉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 분당선 선릉역 외 2개역사 승강설비 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357.6㎡

구 분	면 적 (㎡)	내 용	비 고
선릉역	483.5	6,9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포동역	366.8	6,7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대모산입구역	507.3	9,7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	1,357.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9월 6일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사.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축물 및 지장물 조서 : 첨부물 참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 리	
1	강남구 삼성동	172-66	도	43,711.9	269.9		서울특별시					
2	강남구 역삼동	802-31	도	8,610.7	16.6		서울특별시					
3	강남구 역삼동	804	도	107,101.0	197.0		서울특별시					
4	강남구 개포동	153-2	학	27.1	11.6		국토교통부					
5	강남구 개포동	186-19	도	4,390.6	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6	강남구 개포동	198	도	30,351.1	330.2		서울특별시					
7	강남구 개포동	12-8	공	3,212.2	54.6		서울특별시 강남구					
8	강남구 개포동	12-11	공	182.1	1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9	강남구 개포동	184-2	도	7,798.8	38.6		서울특별시					
10	강남구 개포동	196	도	15,458.3	302.0		서울특별시					
합 계				220,843.8	1,357.6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은진개발(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5-2 유창빌딩 901호	서울시계 내 한강 (세빛섬)	기존 허가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세빛섬 하상정비	2016.12.2. ~ 2016.12.23.	2016. 12.6.
			부선 1척 추가		2016.12.6. ~ 2016.12.23.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28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12.15. ~ 2016.12.28.(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2.29. ~ 2017.1.1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32	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	B동 ***호 (조원동, 제니스빌)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37	권*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검암*로 **	***동 ***호 ()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38	김*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번길 **	*동 ***호 (원종동, 동진아파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43	이*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	***동 ***호 (괴안동, 법박휴먼시아+단지)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44	최***엘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길 **	(정릉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48	이*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	***호 (대조동, 보림신원)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50	공*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길 *	***동 ***호 (중계동, 주공*단지아파트)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51	강*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창로 **	나동 ***호 (신곡동, 진흥아파트)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53	박*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번길 **	***동 ***호 (월곶동, 월곶동풍림*차이퍼트)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55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지북로 ***-*	나동 ***호 (장수동, 장수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61	심*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동 ***호 (주인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62	이*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A동 ***호 (이의동,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69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남기좌동, 삼승주택)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73	조*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 (중신동, 한양수자인)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76	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호 (삼성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79	구*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응비로**번길 **	***호 (대화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81	하*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	***동 ***호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84	탁*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호 (상도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85	정*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길 **	(용문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86	서*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호 (역촌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89	박*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호 (성신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98	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가길 **	(성수동*가)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399	손*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호 (군자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02	오*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가길 **	지층***호 (천호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10	박*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	***동***호 (자양동, 구 의현대출시터)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17	김*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번길 **	***호 (신흥동, 렉스빌)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18	엄*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	***동 ***호 (금광동, 래미안금광아파트)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20	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	***호 (불광동, 태양아파트)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21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신사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40	조*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길 **	***호 (거여동, 성심빌라)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57	이*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	*동 ***호 (창동, 상아*차이퍼드)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59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청궁안골길 ***-***	0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60	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	***호 (공덕동, 공덕오피스타)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62	김*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	(성수동*가)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64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로*번길 *-**	(동백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67	이*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	지하*층 *호 (봉천동, 아신빌라)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72	김*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	***호 (휘경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82	이*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길 **	(중곡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83	김*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길 **	***호 (상봉동, 드림하우스)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85	조*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송암로**	***동 ***호 (남양동, 양지마을*단지)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87	강*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성수동*가)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89	LI RI***NG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나길 **	*층 (자양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92	김*노	지정장소외 야영, 취사	1,000,000	80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93	조*현	지정장소의 야영, 취사	1,000,000	80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도곡동, 경덕빌딩)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95	장*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관악구신림동	****-***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96	홍*진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길 *	***동***호 (창신동, 두산아파트)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497	김*화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논현동, 웰드빌라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05	송*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호 (송원동, 더 패밀리 고시원)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06	강*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길 **	***동 ****호 (신당동, 약수하이츠아파트)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08	정*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	(이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13	한*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나길 **	B**호 (휘경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15	최*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길 **	***동 ***호 (고척동, 대우아파트)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32	이*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번길 **	***동***호 (호계동, 호계*차현대홈타운)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33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 (간석동, 우성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35	권*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호 (장기동, 청송마을 중흥S-클래스아파트)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38	정*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복현*길 ***	***호 (오창읍)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47	김*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하인로 ***	***동 ***호 (하인동, 고층주공아파트)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48	공*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아파트)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49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50	이*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51	최**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길 ***	(서초동, 구유빌딩)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53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55	서*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길 *	(사당동, 에드빌딩)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56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62	정*식, 김*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호 (자양동, 해연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67	현대***주식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대창동>가)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70	서*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	***동 ****호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75	최*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번길 **	***동 ***호 ()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77	정*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동 ***호 (이촌동, 시범아파트(이촌동))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82	김*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영창로**	*층동 **호 (주인동)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83	셀***미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번길 **	*층 ***호 (금오동, 평화아파트)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90	류*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	지층***호 (사근동)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91	정*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번길 **	*층 *층 *호 (원종동, 신영다세대주택)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596	윤*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	***동 ***호 (부개동, 부개주공*단지아파트)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02	유*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길 *-*	***호 (잠실동, 엄지빌)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04	이*주, 배*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양재동, 서초빌라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09	이*민,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호 (녹번동, 시니어캐슬클라시온)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10	유*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	***호 (정릉동, 장미그린빌라)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11	COSTE TH***RY JO*P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호 (충무로*가, 엘크루메트로시티)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15	손*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	지층 ***호 (방이동, 청풍빌라)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28	변*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중곡동)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29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동 ***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34	옥*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잠실동)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35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학사로*길 *	***호 (삼전동)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45	엄*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47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길 **	(용답동)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49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길 **	(용답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50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답중영*길 **	(응답동)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53	김*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재고분로**길 **	***호 (삼전동, 브레스 빌)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56	BAI E***NG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재고분로**길 ***-	***호 (잠실동)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61	YIN ***G YU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	(신길동)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62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로**번길 ***	(영덕동)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63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로**번길 ***	(영덕동)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70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동 ***호 (서초동, 우성 아파트)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73	성*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길 **	**동 ***호 (낙원빌라)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74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당하동, 신안실크벨리아파트)
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84	안*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경기도 하남시 김단남로 ***-	(하남곡동)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86	김*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아차신로**길 **	(자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2	정*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	***동***호 신안아파트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3	여*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길 ***	가동 ***호 (개봉동, LG아트빌)
1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5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길 **	***동 ***호 (홍재동, 한양아파트)
10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6	김*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신로***번길 **	***동 ***호 (직전동, 한화아파트)
10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7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화단지**길 *	(봉천동, 정다운빌)
10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8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	***동***호 (소하동, 동양*차이파트)
10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09	오*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길 **	***호 (등촌동, 태진아름빌라)
10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10	박*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길 ***	***호 (임사동)
1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12	문*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비림드라*길 ***	(풍납동)
1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21	김*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다길 *	(마장동)
1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22	이*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잠원동, 로얄주택)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23	이*재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가길 ***-	(원효로*가)
1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24	윤*석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26	김*숙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29	이*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	***호 (치평동)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30	장*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가길 **	***호 (목동)
1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31	권*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길 **	B**호 (서초동, 산성빌라)
1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33	곽*구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	***호 (가락동, 일정빌딩)
1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39	윤*석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45	김*석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가길 *	(보광동)
1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46	김*식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길 **	***동 ***호 (신길동, 신길동 대성 유니트 아파트)
1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47	서*숙	바뀌기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호 (서초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 주소
1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48	천*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선로**가길 **	(청량리동)
1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50	윤*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가길 **	***동 ***호 (가락동, 송파성원생태빌)
1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52	송*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	*층 (사우동)
1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54	유*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가길 **	***호 (반포동)
1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55	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머루숯길 **	***동 ***호 (신원대주택)
1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56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가길 **	***호 (역삼동)
1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57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가길 **	***호 (역삼동)
1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61	이*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송*가길 ***-	***호 (등송동)
1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63	김*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가길 **	비***호 (병배동, 롯데하이즈빌라)
1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64	김*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	***호 (후암동)
1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65	남*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가길 ***	(반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66	허*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	***동 ***호 (주공퇴계원*단지)
1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69	김*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동 ***호 (봉천동, 낙성대현대아파트)
1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70	신*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호 (동작동)
1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71	이*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길 *	****호 (봉천동, 프라바다)
1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75	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78	서*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호 (서초동)
1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80	김*식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곳**길 *	***호 (방배동)
1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87	박*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번길 **	*층 ***호 (주인동, 정우하이츠빌)
1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92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길 ***	***호 (청량리동, 동일아트맨션)
1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93	남*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번길 ***	(소사본동)
1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796	이*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	***동 ***호 (미이동, SK북한산스타이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800	김*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신사동)
1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801	최*웅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논현동)
1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804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길 ***	***호 (신사동, 영종빌)
1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805	남*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릉로 ***	***동 ***호 (청담동, 현대아파트)
1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808	지*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길 ***-	***호 (논현동)
1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810	김*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아문길 ***-	(운정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28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12.15. ~ 2016.12.28.(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2.29. ~ 2017.1.1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53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양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길 *	(망원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8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씨***건 설	폐문부재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	***호 (석남동, 청산빌딩)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8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현대*** 주식회사	수취인불명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	(대명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1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한*훈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벽달로***단길 *--*	***호 (안양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20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에***터 스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	***호 (이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7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512번가의 *** 사업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온남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식회사 ***래정보기 술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천로**길 **	***호 (거여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12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조*남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종암역로**길 ***-	(중화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19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주)**캡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길 ***-	(서초동, 구유빌딩)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정,이*준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	***동 ***호 (신월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음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87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형	수취인불명	경기도 파주시 해솔로 **	***동 ***호 (목동동, 해 솔마을*단지 두산위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5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바이**톤(주)	주소불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호, ***호 (상대원동)
1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3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봉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나길 **	C동 ***호 (시흥동, 시흥아 파트)
1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86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현*호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길 ***-	(중화동)
1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88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도*영	주소불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상동)
1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9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트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호 (가산동, 대림테크노 타운*자)
1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홍*진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	***동 ***호 (청담동, 건영 아파트)
1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44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범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등대문구 장한로 **	***호 (장안동, 장안현대벤 처빌)
1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6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이슨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층 (논현동, 렉스웨이빌딩)
2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0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진	수취인불명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	(천북면)
2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42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은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노량진동, 짐키드어린이집)
2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42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은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노량진동, 짐키드어린이집)
2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07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문*상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	다동 ***호 (봉천동, 현대연 립)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0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진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진구 지양로**가길 **	***호 (구의동, 성광빌라)
2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3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영 박*순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	***동 ***호 (평창동, 예능 교회)
2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3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차*준	수취인불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 ***-***	***호 (중동, 동백광명사인 빌)
2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0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임*택	수취인불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	(고촌읍)
2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79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권*웅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	***동 ***호 (청덕동, 휴먼 시아물푸레마을*단지아파트)
2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0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손*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나동 ***호 (연희동, 화이트 빌)
3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14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룡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길 *-*	(공덕동)
3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25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동*인길 **	(공덕동)
3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75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우	폐문부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번길 ***-	***동 ***호 (배방삼정그 린코아아파트)
3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40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류*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	***동 ***호 (반화동, 반화 *단지아파트)
3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4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염창동	***-***
3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814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가*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가길 **	(성내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3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71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	***동 ***호 (회경동, 휘 경동양아파트)
3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84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주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저성로 ***	***동 ***호 (기신동, 행림 마을삼성래미안*차이파트)
3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73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나길 **	***호 (등촌동, 예림홀타운)
3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86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메로**길 *-*	(미아동)
4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65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길 ***-	지층 ***호 (염창동, 국제빌 라)
4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65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홍*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방화동)
4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65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길 ***-	*층호 (천호동)
4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80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송*경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	*동 ***호 (잠원동, 한강아 파트)
4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65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동 ***호 (변화동, 방화 단지아파트)
4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72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한*호	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	기동 ***호 ()
4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72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고*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나길 **	***호 (남기좌동)
4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테료	2016-11	00174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양*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길 **	***동 ***호 (우면동, 엘에 이치서초*단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8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한*민, 허*헬	폐문부재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로 **	***동 ***호 (석림동, 주공 아파트)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81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남	수취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번길 **	***동 ***호 (박달동, 우성 아파트)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4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장*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옥탑층 (연남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83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석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동 ***호 (구성동, 구성 아이파크)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7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황*영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동 ***호 (상현동, 상 현마을수지센트럴아이파크)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7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동 ***호 (정안동, 신부 파스카 아파트)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3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장*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옥탑층 (연남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64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함*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길 **	***호 (양재동, 두성빌딩)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0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산*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	***호 (천호동, 천호역 강 푸르지오시티)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1	00176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남*진	폐문부재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여양*로 *****-*	0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4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21-8번지
 - 면 적 : 영구 605㎡, 일시 2,21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징검다리 설치
 - 내 역 : 징검다리 B=2.4m, L=60.2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2.09.~2021.12.08.(착공일로부터 180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3번지
 - 면 적 : 영구 605㎡, 일시 2,21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금조성용 지주이용광고물 설치
 - 내 역 : 광고탑(2개소, A=18×8m, H=30m)
5. 점용기간 : 2016.12.09.~2021.12.08.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